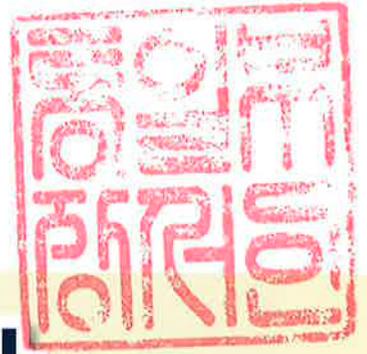


사회생활



007142
9
년대

면지



사회생활



●●● 책 머리에

남과 북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같은 문화를 공유해 왔으나,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심화된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낯선 문제들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차이를 이해하고 법·제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남한의 법·제도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교재에 다양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초보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와 법·제도 등에 빨리 적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원장

1장 사회보장제도 이해 / 1

I. 사회보장제도	3
II. 사회보험	5
III. 공공부조	22
IV. 해당 기관 상담전화	43

2장 생활경제 및 금융 / 45

I. 생활경제	47
1. 가계경제	47
2. 소득관리	49
3. 합리적인 소비생활	50
4. 현명한 신용생활	55
II. 생활금융	59
1. 금융에 대한 이해	59
2.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60
3. 금융상품 거래시 유의 사항	66
4. 금융·보험 사기의 예방	74

3장 생활법률 / 83

I. 남북한 법제 비교	85
1. 남북한 법의 특성	85
2. 남북한 사법제도 비교	86
3. 법의 필요성	88
4. 남북한의 국회	89
5. 인권과 법	90
II. 국가와 법	91
1. 국가와 법	91
2. 법의 종류	93
3. 범죄와 형벌	95
4. 사법부	96
5.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98
6. 북한이탈주민과 국가기관	99
III. 개인생활과 법	100
1. 사법(私法)의 발달	100
2. 법이 규율하는 개인생활	101
3. 분쟁의 해결방법	101
4.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102

5. 소유권의 취득시기	103
6.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104
7.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105
8. 상속	106
9. 가족과 친족	107
10. 혼인과 이혼	108
IV. 북한이탈주민과 법	110
1.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법률문제의 유형	110
2.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121
3. 일상생활과 범죄 예방	122
4. 권리구제 기관과 절차	125

4장 결혼과 가정생활 /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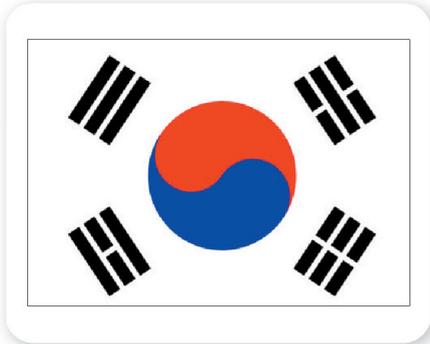
1. 건강한 사랑과 결혼	131
2.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133
3. 행복한 가족이란?	136
4. 바람직한 가족관계	137
5.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발달시기별 특징 이해	141
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방안	144

5장 주요 도시 이해 / 149

- 1. 한반도의 이해 ----- 151
- 2. 남한의 인구, 사회구조 ----- 159
- 3. 주요 도시 소개 ----- 161

국기 : 태극기

국화 : 무궁화



국가 : 애국가

보통빠르게

안익태 작곡



1.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4.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 하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람서리 불 변-함은 우리기상 일세.
 밝은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 일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 - 궁 화 삼 - 천 리 화 려 강 - 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1



Social Life

사회보장제도 이해

I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장의 체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각출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II 사회보험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99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73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국외이주, 사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4)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 미희망 신청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그 기간만큼 제외된다.

5)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6) 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표 1]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년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 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부터	56세부터
1957~1960년생	62세부터	57세부터
1961~1964년생	63세부터	58세부터
1965~1968년생	64세부터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60세부터

*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도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 연령이 달라짐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또는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7)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 특례대상

보호결정일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60세 미만인 자로 특례대상은 구체적 보호결정일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 특례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특례노령연금액

가입기간이 5년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금액으로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공단에서 확인 가능)의 25%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며,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가입기간 5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해서 준다.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국번없이 1355)하고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 및 급여를 청구할 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은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상호간에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을 분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건강보험 보험료

(1) 직장가입자

가입자의 보수월액(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2016.1월부터 6.12%)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한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16.1월부터 179.6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5)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표 2]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종류

구 분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장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6) 본인부담금

과도하게 병원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외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약국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를 부담한다.

7)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

[표 3]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8)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9) 관리 운영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77-1000) 담당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이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3)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등이 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하며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금급여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금급여이나 현재 두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4) 관리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담당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산재인정범위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표 4]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장애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4)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7) 장의비(葬儀費)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4) 관리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 관리 운영한다.

5.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 급여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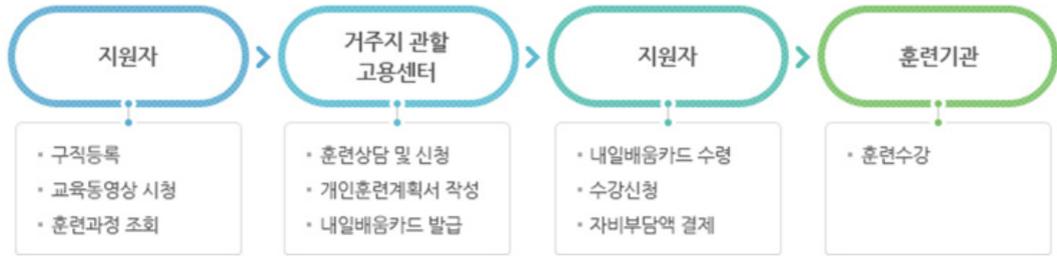
실업에 빠지기 전, 실업을 예방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 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사업주에게는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등이 있다.

가. 내일배움카드(구직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 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11만6천의 훈련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내일

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교육동영상),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도 받고 카드발급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지원절차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재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수강료의 60~100%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대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 근로자가 등이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2)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진다.

나.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따라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표 5]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모성보호급여

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며(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까지 보장) 휴가 시작일 한 달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3) 관리운영

고용보험은 노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이다.

III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2)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3) 선정기준

2015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했으나 2015년 7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지원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6]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원=2,084,033원(7인가구 기준) + 247,940원(7인가구 기준-6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은 동일한 값이며 생계급여의 경우(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인 844,335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844,335원에서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됨)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4) 지원내용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text{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95,87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45,880원
 ※ 원단위 올림

(2)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준다.

가.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나.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한다.

[표 8] 주거급여 지원내용(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가구	19만 5천원	17만 4천원	14만 3천원	13만 3천원
2인가구	22만 5천원	19만 5천원	15만 4천원	14만 3천원
3인가구	26만 6천원	23만 6천원	18만 4천원	17만 4천원
4인가구	30만 7천원	27만 6천원	21만 5천원	19만 5천원
5인가구	31만 7천원	28만 7천원	22만 5천원	20만 5천원
6인가구	36만 9천원	33만 8천원	25만 6천원	23만 6천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표 8-1] 주거급여 지원내용(주택개량 지원)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 · 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4)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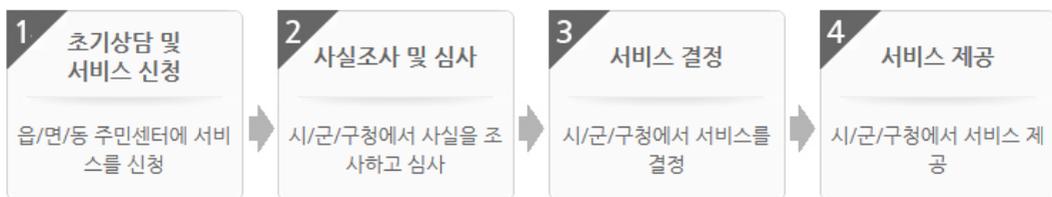
[표 9]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5)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6) 지원절차



2.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하고 급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다.

2)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3) 선정기준

(1)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가 선정대상이다.

(2)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이하이며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대상이다.

4)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u>115.7만원</u>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u>63.6만원 이내</u>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u>143.4만원 이내</u>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5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5)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

6) 지원절차



3.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

2)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를 말한다.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을 말한다.

3) 지원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원한다.

[표 9]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4.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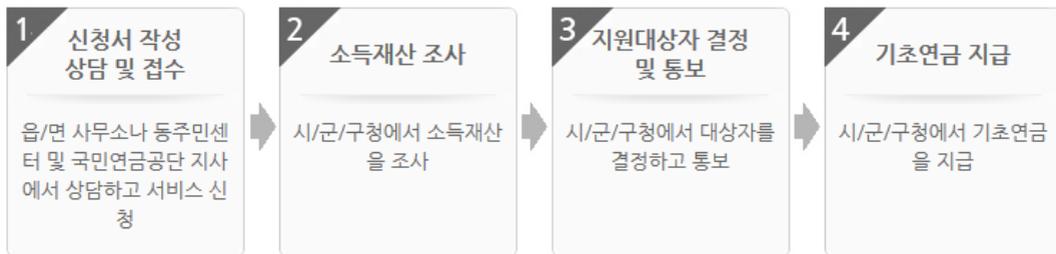
3) 지원내용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6,050원, 부부가구는 329,68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000원~206,05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4) 신청방법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하다.

5) 지원절차



5. 장애인연금제도

1)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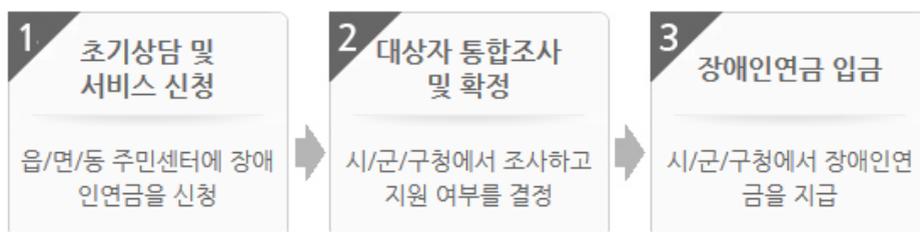
3) 지원내용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4월~2018.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329,680원을 지급하며(2017.4월 ~ 2018.3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4)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5) 지원절차



6. 북한이탈주민 생계 · 의료급여 특례

1)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적용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 동안 지원한다.
- (2)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하나원 재원 중에 수급자로 보장결정 되었더라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수료 후 최초거주지 전입일 부터 기산한다.
- (3) 특례기간 중 취·창업 등으로 탈 수급하였으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수급을 재신청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동 특례 규정 재적용 가능하다.

※ 단, 특례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는 총 수급기간은 최초거주지 전입일로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북한이탈 주민이 근로능력자로 전환된 경우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3년이 도래하는 날까지만 특례 적용한다.(그 반대도 동일)

2) 선정기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단, 정착금 등 재산 산정 제외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수급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규정은 특례 기간 중에만 적용하고 특례 종료 후 일반수급 자로 보장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0]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2,331,973
*가구원 수에 +1명 기준 적용	의료급여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3,109,296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마다 가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급여기준 및 교육급여 선정·급여기준은 해당 지침에 따름

3) 지원내용

- (1)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는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인가구는 2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2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근로능력자가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하나원에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간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조건제시를 유예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7개월~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한다.

4)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5) 지원절차



7.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지원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중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1) 가구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1976. 12. 31.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소득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3)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4) 신청제외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되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30만원 지원된다.

(1) 단독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7만원
900만원 이상 ~ 1천 300만원 미만	77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7

(2)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900만원 이상 ~ 1천 200만원 미만	185만원
1천 200만원 이상 ~ 2천 100만원 미만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85

(3)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123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3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3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30

4) 신청기간

- (1)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 (2)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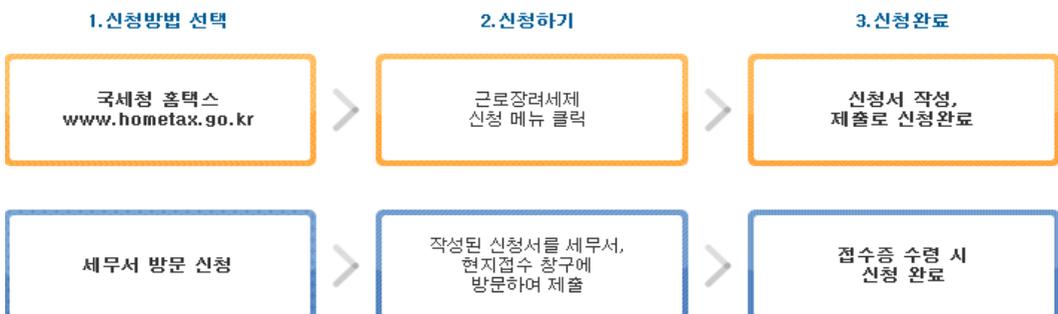
5) 신청절차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 모바일 앱이나 전화(ARS)로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2)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8.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제도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지원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중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1)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3)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한다).

(4) 신청제외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지원내용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00만원) × 1,900분의 20]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만원) × 1,500분의 20]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4) 신청절차

매년 5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5)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되므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IV 해당 기관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 ☎ 129 / www.129.go.kr
- 고용노동부 : ☎ 1350 /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 ☎ 1350 / www.hrd-net.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 ☎ 02-2100-5786/ <http://www.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031-670-9328
- 국민연금공단 : ☎ 1355/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www.nhis.or.kr
-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www.kcomwel.or.kr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 ☎ 02-3215-5771, 5800/
www.koreahana.or.kr
- □ 국세청 : ☎ 126 / www.hometax.go.kr

2



Social Life

생활경제 및 금융

I 생활경제

1. 가계경제

(1) 국민경제의 3대 주체

일반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를 국민경제의 3대 주체라 한다.

가계는 소비의 경제주체로서의 가정을 의미한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한다. 경제 내에서 가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계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인 소비의 주체이며, 기업에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며,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한편 기업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기업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생산경제 주체인데, 이는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생긴 수입을 기초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기업은 한 나라에서 부가가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교육, 경제·사회 개발 등의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가계수입과 지출

경제생활의 출발은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계의 수입은 일정기간 동안 주로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때 생기며, 토지나 주택 그리고 여유 돈이 있는 사람은 자산(재산)을 빌려준 대가로 소득(임료, 임대수입)을 얻기도 한다. 반면에 가계의 지출은 일정기간 동안 가계의 구성원들이 가계의 수입으로 상품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진다.

▶ 가계수입

- ① 근로소득(임금) : 일(노동력)의 보수를 말한다.
- ② 사업소득 : 사업이익을 말한다.
- ③ 재산소득 : 토지세, 집세, 이자, 주식, 투자배당 등을 말한다.

▶ 가계지출

- ① 식품비 : 주식과 부식, 외식, 기호식품 등에 쓰이는 비용
- ② 피복비 : 의류, 침구 등에 쓰이는 비용
- ③ 주거비 : 집세(월세, 전세),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등 주거에 드는 비용
- ④ 교육비 : 학교 교육, 학원 수강 등에 드는 비용
- ⑤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 ⑥ 기 타 : 교통비, 의료비, 문화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주거관리비 등의 비용

2. 소득관리

(1) 소비와 저축

소득은 크게 소비와 저축으로 나뉜다. 소비는 바로 지금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소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저축은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저축은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할 때, 소비 지출이 많아지면 저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지출이 줄어들면 저축이 증가한다. 만일 소비가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음(-)의 저축, 즉 부채(빚)가 발생하게 된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유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하여 자신의 경제적 미래가 불안해질 경우,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의 증대이므로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린다.

(2) 소득과 소비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증가된 소비 능력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비가 늘어난다. 물론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한다.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득은 아무래도 현재의 소득이겠지만, 반드시 현재의 소득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소득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소득도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거의 소득 수준도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소득이 높아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그 때의 소비수준을 잊지 못해 소득이 낮아진 현재에도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를 더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번 높아진 소비수준을 낮추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소득, 현재의 소득, 미래의 소득이 모두 현재의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의 풍요롭던 생활을 못 잊어 자신의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과소비(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은 것)를 일삼는다든지, 불확실한 미래의 소득만 믿고 미리 소비를 하고 보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소비생활태도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자신의 분수를 지켜,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소비를 해 나가야 한다.

3. 합리적인 소비생활

1) 합리적 소비의 조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돈을 들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다 가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합리적인 소비가 강조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가. 능력에 맞는 계획적 소비

합리적인 소비의 첫째 조건은 구매에 관한 결정을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다가도 판매자의 선전이나 설득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를 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당장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상이나 신용 카드¹⁾로 일단 구입하고 보는 식의 구매 습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신용카드는 공짜가 아니다.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즉석에서 구입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음의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 ① 그 상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 ② 상품의 가격은 적정한가.
- ③ 현재 자신의 정상적인 수입으로 상품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지출)할 수 있는가.

나. 구입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외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상품을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만족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를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으로부터 예상되는 편익(편리함과 유익함)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설명에만 의존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칫 충동적인 구매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그 상품의 상표(brand)나 제조회사를 믿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1) 상품을 사는 경우 원래는 상품과 현금(돈)을 동시에 교환해야 하는 게 시장에서의 거래의 원칙이다.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면 우리는 그 순간 신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곧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카드대금 결제기일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대금 지급은 일정 시점 후에 이루어진다.

상품에 대한 평을 듣고 상품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상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유명상표만을 찾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가 아니다. 이런 소비는 과시소비로 상품보다는 상표를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동기가 더 크다.

상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다.

- ① 반품과 환불은 가능한가(언제까지).
- ②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A/S)는 잘 지원되고 있는가.
- ③ 자동차 등의 구입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며 유지비는 얼마나 드는가.

다. 소비의 기회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²⁾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좋은 것은 거저 오는 법이 없으며 거기에는 항상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다. 소비에 있어 구입할 상품의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못지않게 그 상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품의 가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상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여유 돈으로 사는 사람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는 사람 간에는 기회비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소비란, 최고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산(자산 또는 재력) 범위 내에서 최선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기회비용의 핵심인 가격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의 기회비용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격 외에 대금 지불 방법이나 지불 시기도 빼놓을 수 없다.

2) “땀을 흘리지 않고는 빵을 먹을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공짜는 절대 없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2) 비합리적 소비

우리는 일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모방이나 충동에 의해 자신의 소비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는 소비 행위는 후회를 불러 오기 쉬운 만큼, 평소의 계획이나 필요와 관계없는 충동구매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일상의 소비 가운데는 구입하는 상품으로부터 효용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층계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는지, 그 사람이 저축한 돈(금융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싼 옷을 입고 있거나, 큰 집에 살고 있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사회적 지위를 감추기 위하여 비싼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보다는 특정 상표에 집착하는 소비행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소비로 자칫 상품의 기능보다는 비싼 가격이나 외양만을 추구하는, 주객이 전도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항상 가격 및 품질을 잘 비교하여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소비는 문자 그대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비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환경도 문제이다.

3) 반성과 예칙을 주는 가계부

합리적인 소비생활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 부자란 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의 가계부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대체로 동네 슈퍼마켓의 물품을 구입하는 독신 여성의 1개월 가계부를 작성한 것이다.

가계부는 불필요한 돈을 쓰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지출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기 지출

월 세	관리비	전 기	물	가 스	난 방	TV 수신료	전 화	핸드폰	교통비	합 계
175,000	35,700	8,500	5,700	8,200	52,000	16,500	35,000	48,000	60,000	444,600

이달의 소득과 지출

소 득	지 출			잔 액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지출 총액	
1,300,000	444,600	253,950	698,550	601,450

가계부(1개월)

날 짜	구입 물품의 가격	합 계
1	쌀(10kg)-25,000 옥수수기름(1.5kg)-4,350	29,350
2	참기름(300g)-3,300 된장(1kg)-2,600	5,900
3	라면(1박스)-12,000 간장(1kg)-2,600	14,600
4	계란(1판)-4,500 식초(0.5kg)-800	5,300
5	청바지-19,000 셔츠-25,000	44,000
6		
7	감자(2kg)-2,400 당근(1kg)-1,600	4,000
8		
9	생선(1마리)-1,600 선크림-6,000	7,600
10	화장지(24개)-10,000 복숭아(7개)-5,000	15,000

날 짜	구입 물품의 가격	합 계
11		
12	태양초고추장(1kg)-5,700 양파(6개)-1,600	7,300
13	배추(2포기)-3,500 무(1개)-1,500	6,000
14		
15	삼푸-4,000 가루비누-2,000	6,000
16		
17	두부(1모)-1,000 파(1단)-700	1,700
18		
19	돼지고기(1근)-12,000 상추(300g)-2,200	14,200
20	파(1단)-1,000 고구마(1kg)-3,000	4,000
21		
22	샌들-15,000	15,000
23		
24	직원결혼식-50,000	50,000
25		
26	명애언니와 식사-18,000	18,000
27		
28	방울토마토(1kg)-2,500	2,500
29		
30	사과(5개)-3,500	3,500
합 계		253,950

4. 현명한 신용생활

1) 신용의 개념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신용’이란 돈을 빌려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더라도 물건 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 신용이 좋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신용이 나쁘다고 한다.

금융기관들은 모든 고객들의 신용에 대해 수시로 조사하여 신용등급을 관리·공유하고 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보낸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에는 신용거래정보(대출·채무보증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부도 등),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 등), 공공정보(세금 체납 등) 등이 있다.

2) 신용관리의 중요성

이 신용등급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래를 했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차별을 받게 된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거나 대출기간을 늘이는 등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나쁘면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할부로 사거나 휴대폰을 사거나, 취업, 이민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금융거래를 할 때 최대한 신용을 지켜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인 셈이다.

3) 올바른 신용관리 요령

개인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둘째, 소득수준을 넘는 지출을 해야 할 경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데까지만 빌리고 또한 이자와 원금은 약속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 단기간 사용할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① 예적금 및 보험계약 담보 대출 ② 마이너스 통장 ③ 신용대출 등의 순으로 받으면 좋다. 그러나 일정기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 유리하다.³⁾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승진, 취직, 자격증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대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 방법은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만약 채무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 또는 법원(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아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대출금 이자 납부일, 이동통신 요금 납부일 등을 지나서 납부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자동이체를 해놓은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도 수시로 결제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여 단 하루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⁴⁾ 갚아야 할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용등급 평가에 빠르게 반영되어 곧바로 일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지만, 소액의 전화 통화 요금이라도 제때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⁵⁾

넷째, 주거채 은행을 정하여 금융거래를 집중한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단골 고객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예금 또는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재테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금의 이자가 다시 대출 원금에 포함되어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부과되므로 복리로 이자를 내게 되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 4) 동일은행(당행) 계좌이체는 자동 이체일에 출금되지만, 타행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경우 이체일 전 영업일에 출금됨을 유의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신한으로 자동이체를 한 경우 이체일을 9.13(금)이라면 실제 출금은 전 영업일인 9.12(목)에 실행된다. 때문에 실제 출금되는 날의 은행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5) 연체금 10만 원 이상이면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까지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섯째,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과거 신용거래 실적 및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체 없는 대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건전한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www.kfb.or.kr) 또는 신용정보회사(KCB, NICE) 등 신용조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보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개월에 1번씩 무료 열람 기회 이용).

여섯째, 신용카드는 한·두개를 집중하여 사용한다.

일곱째,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금융기관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여덟째, 주소, 연락처 변경시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II 생활금융

1. 금융에 대한 이해

1) 금융의 의미

금융은 돈의 유통,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돈)을 조달하거나 운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금융은 경제의 혈액에 비유한다. 사람이 혈액(피)이 없이 살 수 없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금융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자금의 흐름은 개인 사이, 기업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그것의 큰 흐름은 개인과 기업부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항상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금부족 부문이며,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이 많기 때문에 자금잉여 부문이 일반적이다. 개인이 저축한 돈이 은행의 중개로 기업에 대출된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은 항상 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 두 부문 사이에서 개인으로부터 기업으로 자금순환이 이루어진다.

2) 금융시장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은 이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며 이런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상품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 되듯이,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 즉 자금공급이 늘고 자금의 수요 곧 대출이 줄며, 반대로 이자율이 내리면 자금의 공급 곧 저축이 줄고 자금의 수요 곧 대출이 늘어난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개인이 중개역할을 한다면 사금융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흔히 ‘사채를 쓴다’라고 한다. 공공 금융기관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사금융의 이자는 아주 비싼 편이다.



2.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1) 금융기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다. 하나원 수수료 후 사회에 나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은행말고도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종류와 차이를 알아놓으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통상 은행권금융기관과 비은행권금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⁶⁾ 은행권금융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으며, 비은행권금융기관으로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이 있다.

6) ① 제1금융권 : 은행, ② 제2금융권 :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투자신탁회사, ③ 제3금융권(소비자 금융) : 사채(대부)업체로 나눌 수 있다.

가. 은행권 금융기관(제1금융권)

- 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발권은행으로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며, 화폐의 양을 조절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하는 ‘은행의 은행’ 구실을 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 ② **일반은행은 길거리에서 보는 많은 은행들이 여기에 속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예금,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으로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 있다.
 - 지방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으로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과 같은 은행이 있다.
- ③ **특수은행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부문에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면서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활동도 한다.
 - 산업은행은 큰 규모 시설의 산업자금을 장기적으로 빌려준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중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조합도 있다. 이러한 조합들은 저축과 농·축·수산업 자금 대부업무를 한다.

나. 비은행권 금융기관(제2금융권)

- ① **보험회사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사망, 교통사고, 화재 등의 위험을 당했을 때 물질적으로 대비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이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에 준비시켜 주는 생명보험회사와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로 보상해주는 손해보험회사로 구분된다.

- ② 증권회사는 여러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금융 기관이다. 또한 기업의 상장(기업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돕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증권을 매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투자할 돈은 있지만 직접 투자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신해 투자를 해준다. 펀드를 만들고 또 펀드에 모인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은행과 증권 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 ④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은 일반서민이나 중소 사업자가 목돈을 맡기기도 하고 필요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다.
- 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 또는 회원들이 자금을 조성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유통)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기관이다. 보통 지역, 직장(직업), 종교 등 공통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협동조합(신협), 농·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규모가 작아 안정성은 떨어 지지만 대출이 손쉽고 금리와 세제상의 우대혜택이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잠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

- ① 이용의 편리성 : 은행은 점포가 훨씬 많고 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예금과 대출, 보험, 펀드, 외환, 공과금 납부 등)를 취급하고 있어 거래하기 편리하다.
- ② 금리(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비율) :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나쁘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는 비싸다. 금리만 볼 때 돈을 빌릴 때는 은행이 돈을 맡길때는 제2금융권이 매력적이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에는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종류가 있다.

가. 은행권 금융상품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득이다. 금융 소득도 소득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자소득세)을 내야 한다.

- ① **보통예금** : 돈을 아무 때나 맡기고 찾을 수가 있어 편리하나 이자율이 낮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한다.
- ② **당좌예금** : 상인, 회사, 관청 등 예금과 인출이 잦은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 수표 출납을 할 수 있어 편리하나, 이자가 없다.
- ③ **정기예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계약 하에 맡기는 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예금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며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 ④ **정기적금** : 일정한 기한에 일정금액을 계속 적립하다 특정 기한이 되면 목돈으로 찾게 되는 은행 예금이며 이자도 붙는다.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다음의 금융상품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이거나 85㎡이하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마련 적금이며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이 허용된다(201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 ⑥ **생계형 저축** : 1인 최고 3,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이거나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에 한해서이다(2014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해당).

나. 비은행권 금융상품

- ① 적립식 목적 신탁, 적립식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이 있다.
투자를 목적의 적립 방법으로 신탁하여 이익금을 배당받는 금융상품이다. 시중의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유혹이 크지만 손해도 역시 감수해야 하므로 은행권 상품보다 위험이 크다.

- ② 보험 상품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고 손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로 보험상품을 이용하는데 생명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장애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질병 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암보험 등과 같은 건강보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I), (II)가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I)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이라고 한다.

- ③ 주식과 채권
주식이란,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보통 5,000원 권으로 발행한다.
기업을 확장하고 기술혁신(또는 기술개발)을 하려면 큰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윤으로만 조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사업규모를 늘려간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면 기업 가치를 나눠주는 대신 저렴한 비용 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 기업이 앞으로 수익성이 높고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시가격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주당 15,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8개월 만에 이 주식이 주당 20,000원에 거래될 수 있다. 그러면 주당 5,0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주식투자는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주식은 정보력이나 전문성 없이는 돈을 벌기 어렵다.

기업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면 연말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준다. 만약 그 회사가 돈을 못 벌게 되면 투자자는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해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주식제도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도 좋고, 단기간 내에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제도이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주식가격변동이 크며 불확실성이 커서 투기성이 높음을 알아야 한다.

채권(債券)이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증거로 받는 유가증권, 즉 차용증서이다. 채권은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으며, 약속된 기한이 되면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과 매매가 가능하다.

주식과 채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성격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주식은 상환기간이 없는 자본금이고,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는 부채이다.
- 주주는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 주식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채권은 약정기한이 되면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 주식은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채권은 기한이 되면 투자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주가의 변동 폭은 대체로 크지만, 채권가격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작다.

3. 금융상품 거래시 유의 사항

1) 은행 거래

가. 예금 거래시 살펴야 할 사항

은행에서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예금 거래 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⁷⁾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대출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고, 공범으로 몰려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통장을 만들 때에는 보통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하며,⁸⁾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은행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팔기 때문에 자신이 드는 상품이 적금인지, 저축보험(보험상품)인지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한다.

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큰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영을 잘못하거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 투자매매(중개)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문을 닫게 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농협, 수협, 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농어민,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준금융기관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기금으로 보호하고 있다.

7)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8)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결혼기념일 등과 같이 공개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번호는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상품도 많이 판매한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이자를 더 지급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에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권유를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우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 인터넷, 모바일(휴대폰) 거래 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지출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권장하고 있고, 점포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에 비해 거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금융 거래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금융사기 예방과 구제방법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2) 신용카드 사용

가. 신용카드의 이용 원리

신용카드⁹⁾의 이용원리는 카드 회원은 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상점은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며, 카드 회원은 나중에 카드 회사에 대금을 내는 원리다. 먼저 신용카드회사는 카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

9) 신용카드란 외상(신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구매 대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고 신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불수단의 하나로,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라고도 불린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카드 하나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편리한 일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면 큰 짐이 된다.

상태를 조사,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 회원)은 이 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한다. 카드 회사는 카드회원에게 연회비나 할부 수수료, 이자를 받는다. 물건 값은 카드 회사가 카드 회원을 대신해 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자 없이 대금을 받게 된다. 대신 카드회사는 카드 가맹점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원리로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이용 원리

연회비 카드 이용대금 납부, 카드 발급, 가맹점 수수료, 카드 이용 대금 결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 구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 판매

안전한 온라인 쇼핑 8가지 원칙

- 1 신원이 확실한 업체에서만 거래한다.
- 2 구입결정 전에 반품 및 해지요령, 피해보상 처리부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3 컴퓨터나 음향기기 등 복잡한 제품은 지명도가 있는 업체에서 구매한다.
- 4 공짜와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한다.
- 5 배달받은 상품은 제품의 이상여부를 바로 확인한다.
- 6 인터넷 거래내역은 저장하거나 출력해둔다.
- 7 업체가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약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 8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보호단체에 신고한다.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나. 신용카드의 장점과 단점(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신용카드의 장점은 우선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을 대출받고 필요한 경우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위험에서 자유롭다. 만약 카드를 잃어버리더라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게다가 연체 없이 결제를 제 날짜에 착실하게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합리적인 가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¹⁰⁾

그러나 신용카드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결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사용해 문제가 되곤 한다.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사용한 후에 대금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 연체로 이어져 신용이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¹¹⁾

다. 과소비 걱정되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이용

과소비가 걱정되면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debit card) 체크카드(check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 사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직불카드는 예금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대금이 자신의 예금계좌 잔액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카드다. 예금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어 외상으로 인한 충동구매의 유혹을 막아준다. 돈 관리가 서툰 사람들에게 적합한 카드라 할 수 있다. 과소비나 연체가 걱정된다면 먼저 직불카드를 쓰면서 카드 사용을 몸에 익히는 게 좋다. 다만 직불카드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이용시간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장점을 모아놓은 카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과소비를 예방해준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물건을 산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후불카드다. 이에 비해 선불카드는 미리 일정액의 현금을 내고 구입하거나 충전한 후 그 한도

10)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보내주는 카드 대금 고지서는 그대로 지출 기록이 돼 가계의 알뜰한 살림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더해서 상품 구매 후 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이자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준다.

11) 카드를 이용한 구매는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현재에 소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때는 장래에 갚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용 카드도 역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비용이 지불된다. 매년 일정한 연회비를 내야할 뿐 아니라 할부 구매 때는 할부 수수료를, 현금을 대출받을 때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불할 때와 카드를 사용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충전형 교통카드와 1회형으로 구입(표시)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백화점 상품권, 예전에 사용하던 공중전화카드 등을 선불 카드로 볼 수 있다.

라. 분실시 구제 방법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사와 결제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누군가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자칫하면 카드 주인인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재 법률로는 분실 도난 신고한 날에서 60일 전부터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현금인출 등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¹²⁾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게 해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금융 사기범죄가 자주 발생하므로 신용카드는 자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되고,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만든 신용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일도 하여서는 안된다.

3) 보험계약 체결

가. 일반적인 사항

어떤 보험종목이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한다. 대개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질문표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¹³⁾

12) 그러나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카드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난신고를 늦게 한 경우 등에는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13)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기존에 중대한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부정하게

보험을 가입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청약의 철회)¹⁴⁾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보험약관¹⁵⁾을 수령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광고방송을 통하여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그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은 장기간의 보험료 납부가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험료 부담능력과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일단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도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만 되돌려 받거나 일부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나.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대체로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계약하는 것이 보통인데, 다른 사람(가족 포함)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타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방식),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 후에 타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14) 2014. 7월부터는 계약자는 청약한 날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5) 보험계약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모두 인쇄하여 책자의 형태로 만드는데, 이를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많이 낸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보험가입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가족만 운전을 하는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일정한 나이 이상만 운전하는 조건도 정해야 한다.¹⁶⁾

보험에 가입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으로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조건을 위반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보험¹⁷⁾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차량 1천만원)은 보상이 가능하다.

라. 상해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가입조건이 다르므로 보험 가입시에 정확하게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상해보험 계약이후 보험가입자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깎일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실손 보상 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

16) 가족들만 운전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가족의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이며 형제, 자매 및 손자, 손녀는 가족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17)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협회(www.knia.or.kr)에서 “의료실비보험” 계약조회 시스템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투자상품 거래

가. 증권 투자

증권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방법을 잘 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 매매를 대신해 줄 것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손해가 날 경우 그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



증권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한 돈의 원금을 잃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투자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손해가 나면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원금 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범죄가 종종 발생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 등 타인에게 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거래 인감,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을 절대 맡겨서는 안된다. 실제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매우 위험한 증권 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화로 증권거래를 주문하거나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이 되는 지점전화를 이용하고, 수시로 월간거래내역을 살펴보아 이상이 있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회사에 이의제기해야 한다.

나. 펀드 가입

펀드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대신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나누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투자에 실패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다. 큰 손해가 날 경우 맡긴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 투자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펀드의 특징이나 투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의 수익률을 보고 펀드가입을 하여서는 안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금융 · 보험 사기의 예방

1) 개념

금융사기는 범죄자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개인을 속여서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과 높은 수익을 미끼로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므로 개인이 금융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는 주로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갈, 사기로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금융사기는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는 범죄행위지만 간혹 금융 거래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자신을 과신할 경우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최신 금융기법들이 빠르게 도입되어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자간 정보 불균형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 금융사기의 유형과 예방

가. 통신 및 전자금융 사기

① 전화를 이용한 사기(보이스 피싱)¹⁸⁾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사기 방법으로서 최근에도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개는 국가기관(경찰 등),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불안하게 하며 속이거나 납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노려 범죄자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기범은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거나 범죄수사를 하는 중이라는 등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면서 피해자를 속인다.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사람이나 경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불안해지기 쉬운데, 국가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즉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화로 묻지 않기 때문에 개인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는 사기로 간주하고 유의해야 된다.

②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한 사기

인터넷 거래는 은행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금융

18) 목소리를 이르는 voice와 낚시를 이르는 fishing을 합한 용어로서, 물고기를 잡기위해 미끼를 이용하듯이 돈을 빼앗기 위해 전화를 이용하는 사기를 의미한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는 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고,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는 워낙 교묘한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대학교수나 사회경험이 많은 직장인들 까지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로부터 접근하여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는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수시로 설치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거래시 수시로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 번에 고액을 송금할 수 없도록 송금액을 제한하는 신청을 미리 금융기관에 해두는 것이 좋다.

③ 전자(문자)대화를 이용한 사기

최근에는 개인 간의 소식을 전달할 때,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전자우편(e-mail)이나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카카오톡, 네이버 메신저 등)을 많이 이용한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문자로만 연락을 할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나 고향사람 등 아는 사람



인 것처럼 속여서 사고가 생겨서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안타까운 마음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들도 인터넷으로 쉽게 노출되고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교묘하게 접근하므로 문자 대화만으로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문자대화로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개인 휴대전화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아는 연락처 말고도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유인하는 내용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다.¹⁹⁾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확인할 경우 나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침투하면서 소액의 금액이 결제되도록 한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는 최첨단 사기행위이다.

소액 결제 사기는 워낙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낯선 문자 메시지는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휴대폰 보안을 취급하는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배포하는 소액결제 사기 방지 프로그램(폰 키퍼)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사기 문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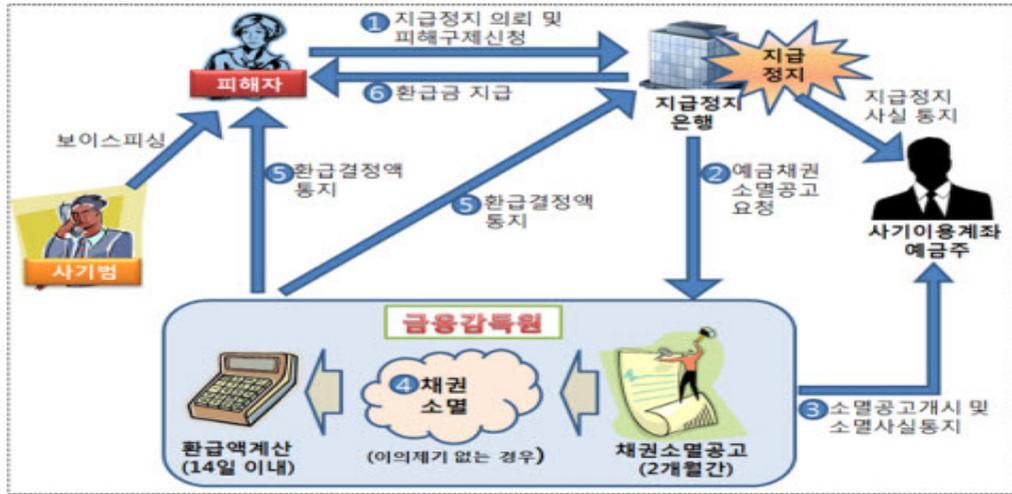
⑤ 통신 및 전자금융 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통신 및 전자금융 사기에 휘말려 돈을 송금하거나 편취당한 경우 우선 경찰청(국번없이 112)이나 은행(금융기관 콜센터)에 송금사실 등을 신고하고 사기이용 계좌(사기범 계좌)에서 지급이 정지되도록 조치한 후 지급정지 요청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계좌에

19)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신청 및 수령 절차〉



인터넷뱅킹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이를 악용한 사이버 금융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예나 지금이나, 피해자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서 출발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처럼 교묘해지는 범죄수법에 동요하지 않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세워 차분한 대응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유사 금융업체에 의한 사기

유사금융업체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로 통상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금융다단계업자(유사수신업체)와 법정한도를 넘는 매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체(사금융업체) 등이 있다.²⁰⁾ 법률에 따른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

20)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년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년 30% 이상의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사람들이 가짜 금융기관의 사기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대부분 일반 금융기관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유인하기 때문이다. 땅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외국의 광산이나 유전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약초나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등 그럴듯한 투자계획을 미끼로 높은 투기 수익을 쫓는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착복한다.

이러한 사기의 특징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고,²¹⁾ 일반 금융기관과 비슷한 상호(00자산관리, 00금융 등)를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한다. 특히 투자 내용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도록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한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금액의 실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업체는 법으로 금지한 금융피라미드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법자금모집 및 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맡기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돈을 빌려쓰고 제 때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 외에 무리하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불법채권추심)를 할 수 없다.²²⁾ 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채권 추심을 당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당국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짜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1) 현재 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대부분 년 3% 미만이다. 은행에 1,000만원을 1년 동안 맡길 경우 1년 후 이자가 30만원 정도 붙는데, 유사수신 기관은 일반 은행보다 몇 배에서 몇 십배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의 몇 배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합법적인 증권투자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일반 은행의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원금을 잃을 위험도 더 크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게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은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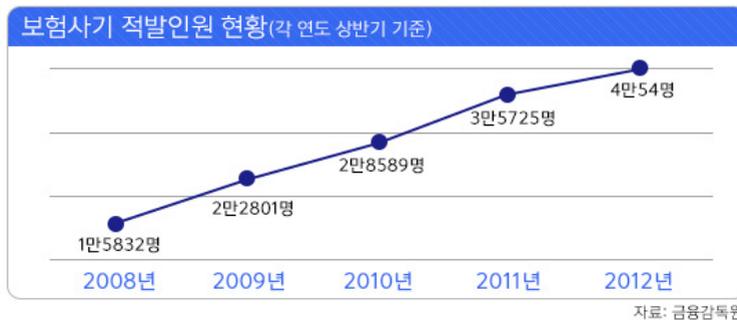
22)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하는 행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다른 사람(가족 포함)에게 대신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3) 보험사기의 유형과 예방

가. 생명보험 범죄

생명보험은 사람의 목숨 값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빚에 쫓기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강제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등 보험사기행위도 매우 잔인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명보험사기는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범죄 전문가들이 개입되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국가기관에서도 수시로 생명보험금 지급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하고 있으므로 결국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자동차보험 사기

자동차보험 사기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나눠 갖는 행위, 교통신호 위반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입원하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는 행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 등 보험회사를 속이는 고의적인 보험사기가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 외에도 몸이 다칠 정도가 아닌 아주 가벼운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심한 경우에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금을 한 번 수령하게 되면 그 기록이 보험업계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두세 차례 이상 상습화될 경우 보험범죄 혐의자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 사기범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자를 노리므로 횡단보도 주행시 주의를 집중하고, 무면허·음주 운전 금지, 차선 변경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및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며,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센터(전화 1332)로 연락하여 관련 상담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다.

다. 상해, 질병보험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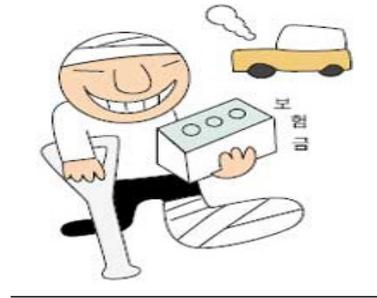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자신의 기왕 질병을 알려야 한다. 기왕 질병이나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회사가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고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비슷한 보험상품들을 경쟁적으로 팔고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질병보험을 가입한 후, 경미한 사고나 가벼운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연중 내내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직업적인 보험사기 환자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²³⁾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23) 특히 국내에 의무기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경미한 질병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 입원을 시켜서 보험금을 나눠 갖는 브로커들과 범죄에 가담한 탈북자들이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직업적인 환자 노릇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정보들이 보험회사의 전산망에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



4) 맺는 말

다양한 금융사기수법은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므로 가장 원칙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스스로 보안의식을 높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보험사기는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농간에 걸려들 수 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험사기의 범주자가 될 경우 정서적,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게는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금융과 보험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전한 사고와 정확한 생활 태도, 합법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면 금융과 보험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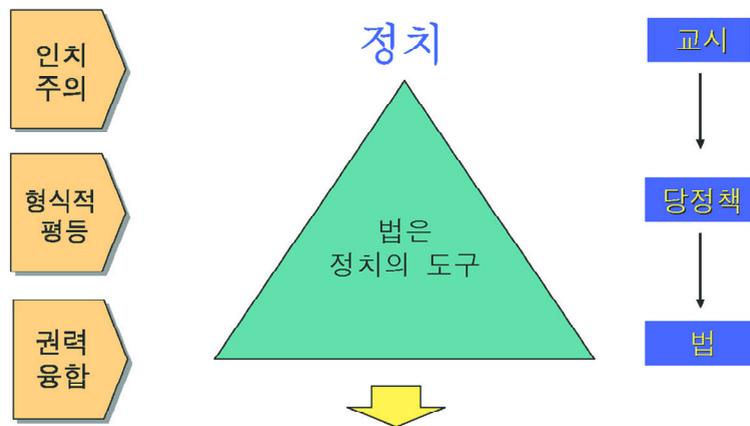
Social Life

생활법률

I 남북한 법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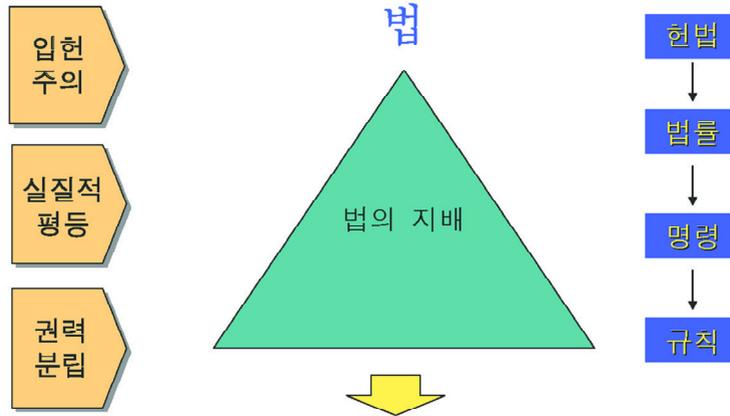
1. 남북한 법의 특성

1) 북한 법의 특성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므로 법 원리도 사회주의법의 특성을 가진다. 모든 제도와 법은 계급성의 관점에서 정치에 종속되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법보다 우선된다. 북한에서 헌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만든 옷처럼, 장식적 기능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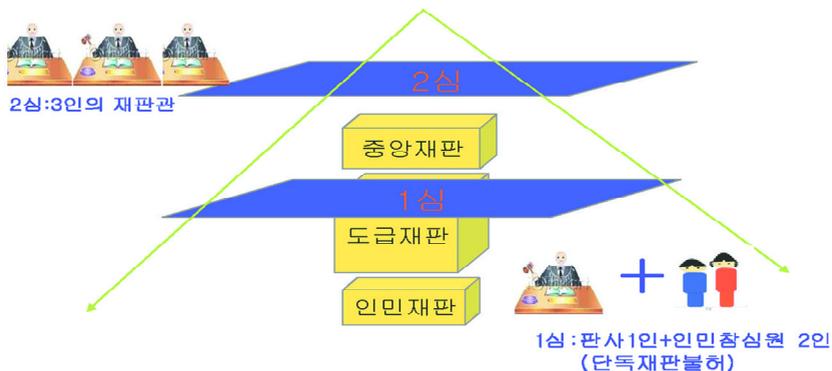
2) 한국 법의 특성



한국의 법은 헌법이라는 최상위의 규범을 국민의 합의로 구성하고 그 하부에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그리고 명령, 규칙 등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 법치국가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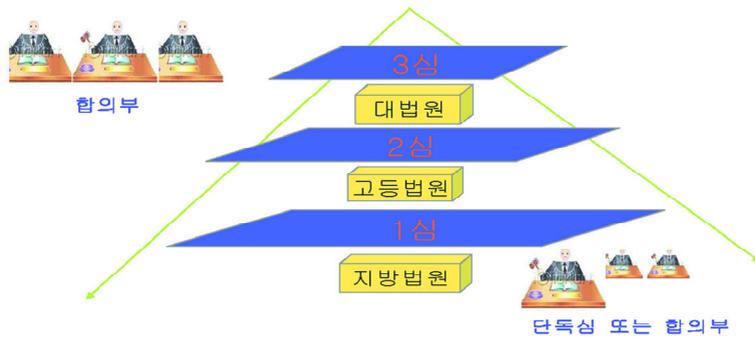
2. 남북한 사법제도 비교

1) 북한의 사법제도



당의 지배를 받는 북한의 사법기관으로 중앙재판소, 도급재판소, 인민재판소가 있다. 인민참심원은 1심 재판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검사가 민사재판에도 관여한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특별한 자격이나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당성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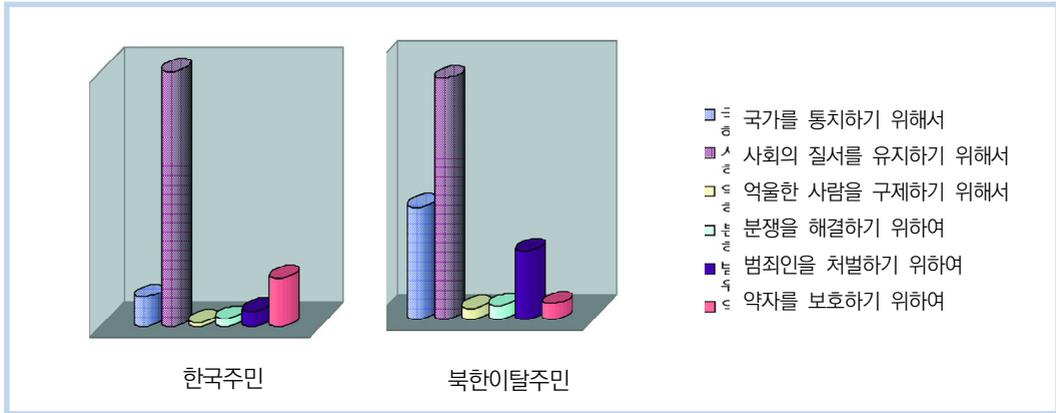
2) 한국의 사법제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된다. 1심의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의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여 3심인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법관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에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 등이 있다.

3. 법의 필요성



법의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의 사회공동체에 적응해야 하므로 한국주민의 법의식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법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은 모두 사회의 질서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꼽았다.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 유지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가 깨어진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의 통치나 범죄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주민은 약자의 보호에 더 많이 답하였다. 국가의 형벌권에 중점을 둔 북한이탈주민의 답과 상대적·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둔 한국주민의 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4. 남북한의 국회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다. 선거는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강조되며, 단일후보에 대한 찬성투표로 진행된다. 선거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의 입법기구는 노동당의 정책을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민대중의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그 중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특정한 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기도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표결 모습(북한)

5. 인권과 법

1) 인권의 보호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다. 국제사회에서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은 반인권적 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치주의의 실현과 인권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므로 부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강제력을 행사하더라도 반드시 법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한다면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치주의는 인권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I 국가와 법

1. 국가와 법

1) 기본권과 국민

가. 기본권이란?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기본권은 신분제가 유지되던 중세사회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었으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시민계층의 요구로 발달되었다.

한국은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미진하였고,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정권을 퇴진 시킨 4·19 혁명,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군사쿠데타에 맞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 된 계기가 되었던 6월 항쟁 등은 기본권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나. 기본권의 종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것을 평등권이라고 하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도 기본권의 핵심내용이다.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언론과 집회도 허용한다. 또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제도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가족에게까지 처벌을 하는 연좌제도 금지한다.

평등권과 자유권이 고전적인 권리라면 현대에 이르러 더욱 강조된 기본권은

참정권과 사회권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참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권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특히 강조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자유권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한 것이다.

그밖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보완적 기본권이라 한다.

다. 기본권의 제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률을 제정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법률을 집행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률을 적용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절차와 판결을 내릴 수 없다

2)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있다. 이 중 나라살림을 위해 세금을 내고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의무교육을 받는 것, 재산권 행사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은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의무도 있다.

2. 법의 종류

1) 국내법

가. 공법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이 해당된다.

①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며 모든 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무효가 된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법

국가의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권력이 분립되면서 나타났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국가권력이 행정부이며 행정법은 이 행정부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행정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기관은 경찰서, 시·군·구청 등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③ 형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를 법에 규정하고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법이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④ 소송법

소송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절차법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현된다.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은 민사소송에서 다루고, 범죄는 형사소송에서 다룬다.

나.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률행위를 다룬다. 민법과 상법이 이에 해당된다.

다. 사회법

사회법은 복지국가의 성립으로 발달되었다. 빈부차이로 인해 약자의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인 간의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의 성격을 지니며 노동 관계법, 경제 통제법,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2) 국제법

가. 국제법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이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명문으로 규정한 것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을 기초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을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라고 한다. 조약은 합의한 나라만 구속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다. 국제관습법은 국제관례를 중시하는 것으로, 관례를 어길 경우 국가의 위상이 훼손된다.

나. 국제기구

제2차 세계 대전을 끝낸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국제연합(UN)이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되었다.

국제연합 이외에도 각 국가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기구 등이 그 예이다.

다. 국제사법기구

국제기구 중 특히 국제사법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다.

3. 범죄와 형벌

1) 범죄의 종류

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범인을 숨겨주고 법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할 수 없다. 불을 내거나 교통수단을 파손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 화폐나 상품권, 우표나 도장을 위조하거나 주인 몰래 사용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마약은 판매,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것도 처벌된다.

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과 상해뿐 아니라 폭행도 형량이 높을 수 있다. 야간에 폭행이 있거나 여러 명이 폭행을 한 경우는 가중 처벌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기력이 없는 부모를 방치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가두거나 협박하고 약취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강간이나 추행은

물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된다. 사업장에 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범죄행위다. 폭행이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물건을 빼앗으면 가중 처벌된다. 맡고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도 안 되며 남의 물건을 부수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2) 형벌의 종류

가. 형벌

형벌은 범죄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절차에 맞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은 범죄자를 벌주는 의미와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목적도 있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을 교도소라 부른다.

나. 형벌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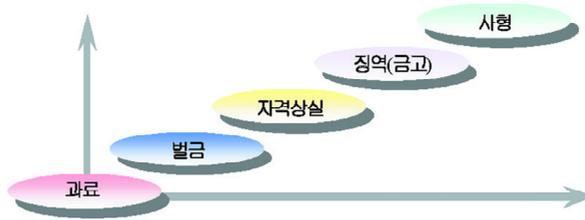
형벌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금고가 있다. 일정한 자격을 정지시키는 명예형과 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벌금 및 과료가 있다.

4. 사법부

1) 사법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곳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곳이 법원이다. 대체로 법원은 법질서를 침해하거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에 소속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며, 국가 기관도 사법부의 판결에 복종한다.

2) 재판의 종류와 절차



형벌의 종류	내용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
징역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
금고	징역에 복무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
자격상실(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 제한
벌금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에 한해 자유박탈

가. 재판의 종류

재판의 종류는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과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있다. 행정재판과 선거재판, 군사재판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 ① 형사재판 : 형사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범죄자는 누구든지 형벌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벌은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은 공평타당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 ② 민사재판 :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많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재판이 개시된다.
- ③ 가사재판 : 가사재판은 주로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혼인, 이혼, 양자, 상속, 유언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5. 법과 관계되는 국가기관

1) 국회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會期)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입법 활동 이외에 국회는 입법권과 함께 예산안을 확정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국정감사권 등의 권한이 있다.

2) 법원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이다. 소송이 있으면 정당한 재판을 하며 민사·형사·행정·가사·소년·선거·특허사건 등 광범위한 재판을 다룬다.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 아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정치적인 사건도 맡는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은 입법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하고,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또 고위 공무원의 탄핵을 결정하고, 민주 질서에 어긋나게 설립된 정당을 해산하며, 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도 관여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경찰서

경찰서는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위이다.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업무도 맡아서 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한다.

5) 검찰청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한다.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보낸다.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주재한다. 대검찰청 아래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있다.

6. 북한이탈주민과 국가기관



III 개인생활과 법

1. 사법(私法)의 발달

1) 근대법의 특징

근대사회의 지배세력이었던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개인의 재산이다. 국가 조차 개인의 재산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의 존중사상이다. 또 집을 사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개인의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약의 자유사상이 있다. 나아가 근대민법은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2) 현대법의 특징

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힘이 센 개인은 더욱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자연히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개인은 부자와 맺은 계약에서 번번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이 점이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는 자유의 존중과 함께 평등한 분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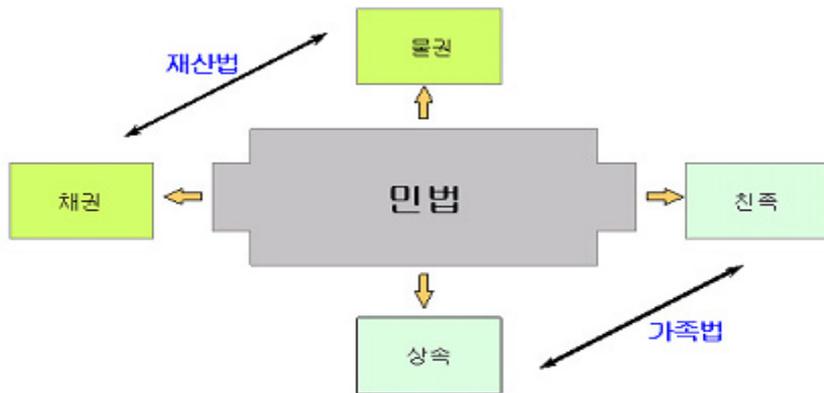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고, 약자와 강자의 계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었다면 약자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도록 했다. 현대 민법은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수정을 해 나갔다.

2. 법이 규율하는 개인생활

개인생활을 규율하는 법에는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물권이 있고,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특히 물권(物權)은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아파트나 책상을 파는 것처럼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범죄자라도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보호된다. 채권(債權)은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결혼식에 쓸 떡을 제 날짜에 만들어 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을 합하여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밖에 개인생활을 규율하는 법에는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족관계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에 관한 법도 포함된다.



3. 분쟁의 해결방법

1) 당사자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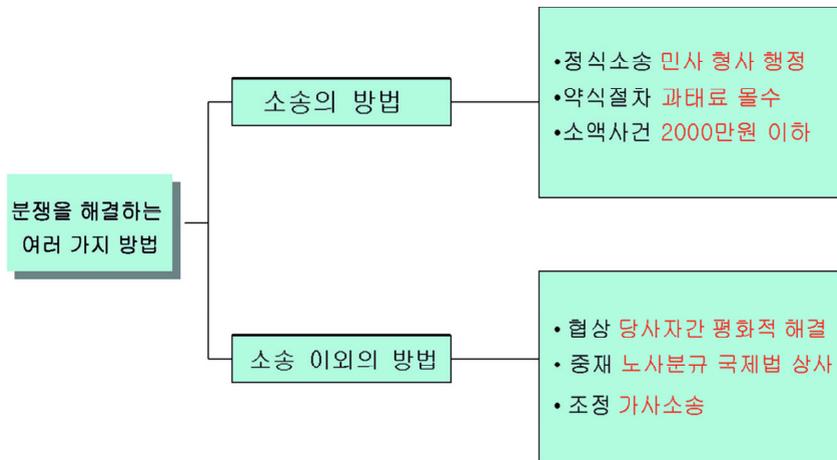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분쟁이 일어났다면 당사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조금씩 양보하여

순조롭게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이익이다.

2) 소송으로 해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송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서 등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노동분쟁이나 가사사건은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 분쟁의 해결방법 】

4.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1) 행위무능력자 제도

법률상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자연인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의를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심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도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데, 만일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상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법률행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책임도 지게 된다.

3) 법인 등

거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정당처럼 법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단체도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소유권의 취득시기

1) 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을 말한다. 거래되는 대부분은 동산이며,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때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

2) 부동산

가. 집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 주로 땅이나 집처럼 재산가치가 큰 경우가 많다.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에 팔수는 없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진짜 주인을 잘 확인해야 한다. 진짜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집을 세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한다. 잔금과 등기서류를 모두 주고받고 등기를 마치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나. 토지

토지는 집과 함께 거래되는 관행이 많은 나라에서 있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집은 별개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확인도 중요하다.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을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할 사항이다. 집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잔금과 등기서류를 모두 주고받고 등기를 마치면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6.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1)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이나 물건을 거래하고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다. 법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할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

2)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의 경우

땅을 산다거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있다. 땅을 사면서 돈을 주었다면 다시 땅은 돌려주고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 여러 번 반복되는 계약의 경우

집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이나 우유, 신문을 배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번 일어나는 계약은 앞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유 계약의 경우 이미 먹은 우유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먹을 부분만 없애는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해지권은 미리 계약으로 그것을 유보하는 약정 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주어지는 법정해지권이 있다.

4) 계약의 취소

취소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취소는 사기나 협박으로 계약을 한 경우처럼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7.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1) 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법원에서 재판으로 다룰 수 있다. 만일 주택 빌리기 계약을 했다면, 이사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았을 경우 이사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 때 잘못을 한 사람이 이사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이다. 손해배상액은 처음부터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하는 정도이고, 손해 배상의 방법은 돈(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

어떤 사람이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세워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빼어버렸을 경우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가 해당된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가한 사람(가해자)이 피해를 당한 사람(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불법행위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걸려있던 간판이 내려앉으면서 머리를 다친 경우처럼 아무도 잘못을 한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간판주인은 간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지거나, 종업원의 잘못을 주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8.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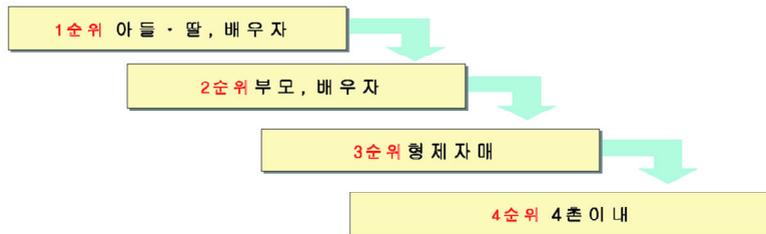
1)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상속은 재산은 물론이고 빚도 물려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한도에서 빚을 갚겠다는 한정 상속의 의사나 상속의 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순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순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아들 딸, 배우자 ② 부모, 배우자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9. 가족과 친족

1) 북한이탈주민과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상태를 국가가 관리하고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한국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호적제도를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한 사람이 한 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출생·국적·친권·한정재산·금치산·친생부인·개명 등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북한이탈주민도 한국주민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며, 이에 따라 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사유를 기록할 수 있다.

2) 가족이란?

가족은 부부와 부모, 자식을 말한다. 부부는 혼인으로 맺어졌고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졌다.

3) 친족이란?

친족은 혈연과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률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로 정한다. 혈족이란 부모나 형제처럼 혈연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인척은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처럼 혼인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를 말한다.

10. 혼인과 이혼

1) 혼인

혼인이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혼인신고는 시(군) 구청에서 할 수 있다.

2) 이혼

이혼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이 이루어지면 부부관계도 정리되고, 혼인으로 이루어졌던 인척관계도 소멸된다.

3) 이혼의 종류

① 협의이혼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별다른 이혼사유 없이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이혼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남편이 부인을 폭행했거나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 경우처럼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사건을 판단한다. 재판이혼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물론,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재판상 이혼요건을 규정한 법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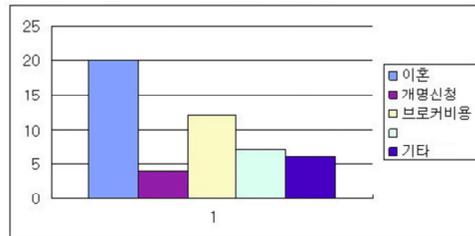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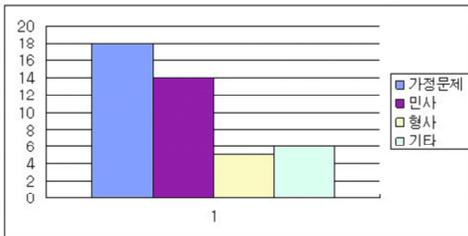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IV 북한이탈주민과 법

1.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법률문제의 유형



1) 가정문제

가. 이혼

북한에서 헤어진 남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얼마 전어야 알았습니다.
이혼을 해야 된다는데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혼인은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혼인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혼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배우자와 먼저 이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와 국제이혼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신청을 받습니다(그림 참조).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절차

나. 가족관계등록부

① 제3국에 있는 자녀의 출생신고

중국에 아이와 남편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 거주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고, 이 아이를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국국적이 있다면 가족초청이나 여행비자 등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중국인처럼 대한민국으로 입국합니다. 입국한 이후에 특별귀화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국국적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니 우선 살고 있는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하나센터,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표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는데 맞는지요? 또 북한의 가족도 가족 관계등록부에 나타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동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나타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가족이 아니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직계 가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되는 것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납니다. 이는 개인의 출생 및 혼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이나 가족관계의 변동과 밀접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개명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또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살고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와 바꾸기를 희망하는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 병원의 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살고 있는 지역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허락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④ 등록기준지 변경

문건에서 하나원이 있는 안성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까?

등록기준지는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곳이며, 등록기준지 변경은 이렇게 만들어진 등록기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안성이나 화천이 등록기준지가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등록기준지를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민사

가. 다단계 피해

하나원을 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무료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좋지 않아 호기심이 생겨 마사지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피부가 일반 치료로는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약을 비를 것을 권유하였고, 만일 화장품을 사서 회원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수입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4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직접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효과도 없고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다단계 거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다단계 피해 경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특히 유의해야 할 거래입니다. 다단계 피해는 처음부터 과도한 돈을 요구하기보다 공짜라는 인식을 주어 일단 유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거래품목도 화장품, 정수기, 전기장판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다단계도 성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연고 등을 이용하여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든지 일단 받을 들여놓으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득이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물건의 내용이 광고나 표시된 바와 다르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의 특징

-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다단계 회사임을 감추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 비싼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유한다.
- 필요이상 친절하고 밥이나 술을 사주며 환심을 산다.
- 별도의 수당을 주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말하며, 사람을 데려올 것을 강권한다.
-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 당장이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나. 과대광고 및 방문판매 피해

신문의 가슴보정기 광고를 보고 회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문 광고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하며 물건 값으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주는 것이 미덥지 않았지만 돈을 입금해야 물건이 온다는 말에 현금으로 모두 내었습니다. 그날 바로 물건이 도착했고 직접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물건이 조잡하였고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항의를 하였지만 이미 물건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과대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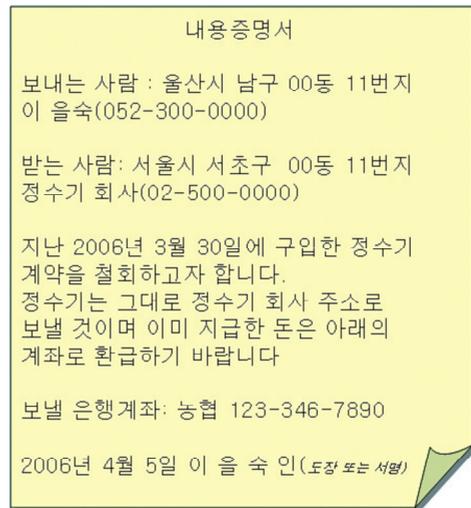
경쟁이 허용되는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고만 믿고 물건을 샀다가 광고내용과 달라 낭패를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허위·과장 광고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판매

방문판매는 소비자가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등 구실로 상품을 뜯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장을 벗기고 사용을 하게 되면 환불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즉흥구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보냄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판매사원이 포장지를 적극적으로 훼손시켰거나 소비자가 단지 상품 상태를 알기 위해 박스를 개봉한 정도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장 훼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일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뒤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습니다. 버스기사는 6~10m 정도 가서 정지하여 내리더니 제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버스 번호판만 적었습니다. 저녁에 몸이 너무 아팠지만 버스기사로부터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① 경찰에 신고하기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리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경찰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사고 후 상대방의 연락처 받기

가해차량의 운전사는 부상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직접 호송하지 못한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에 통보하기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보증해주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합니다.

④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므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조서에 사실 그대로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보험계약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험을 권유하기에 한 달에 25만원씩 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돈도 다 찾을 수 있고 다치거나 암에 걸려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가에 어렵게 결정하였습니다. 1년 뒤 언니의 입국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을 깨면 300만원 정도가 생길 것 같아 해약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50만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또 4대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험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나 질병 등 위험에 대비해 미리 일정한 금액을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약정한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 시 특약, 보장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 만기환급 여부, 보장받을 사람의 추가여부 등 자세한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병이 들거나, 아이를 낳는 등 병원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나이가 많아 노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주의하기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가짜 진단서를 교부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주의한다.

마.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중국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에 아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남자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자 중국에서부터 첩이 될 것을 계약서에 썼기 때문에 저에게 입국비용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에는 일반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첩계약, 이중혼인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상대방은 어떤 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형사

가. 브로커 비용

탈북을 조건으로 한 사람당 600만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아 항의를 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쫓아다니며 돈을 받겠다.”고 위협하여 약정한 600만원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돈을 마련하느라 집도 반납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브로커 분쟁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초기에 겪는 문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원만히 비용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브로커가 통장을 가져가거나 직장에까지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브로커 계약서 대신 돈을 빌린 것처럼 새로운 차용증을 적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브로커가 몰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일단 협상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공갈, 폭력을 행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 등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브로커 계약에 대한 법원의 입장

중국에서 작성된 브로커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등). 브로커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은 서로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브로커가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입증하는 한도에서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나. 교육기간 중의 재물손괴

하나원 교육 중에 독립기념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 긴장이 풀어져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어쩌다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차는 좀 망가졌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습니까?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을 받는 동안 해당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면, 자체규정에 따라 별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인 자동차를 훼손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다쳤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도 추가될 것입니다.

다. 공문서 위조

미국에 한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미국여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어 주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만나 여권을 넘겨받았고, 바로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사례는 브로커가 여권을 만들어 준다고 접근하여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자, 다른 사람의 경력으로 위조여권을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들어오라는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이 비자입니다. 여권을 만드는 것과 비자발급은 다른 것이지요. 위조여권을 만든 이상 비자발급과 무관하게 공문서 위조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중 브로커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입국 이후에도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이전처럼 브로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자칫 재산손해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사용과 관련된 형법규정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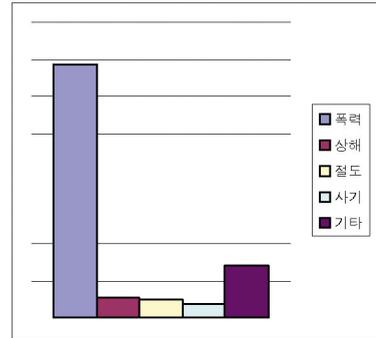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외여행 중 주의사항

1) 중국여행 할 때 주의할 점

북한이탈주민이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여행 중 실종되거나 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지속해 왔고 상당부분 북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부득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위험이 느껴지면 반드시 중국지역 한국 공관에 연락을 취해 지시를 따를 것을 권합니다.



2) 북한주민과 연락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접촉 7일전까지)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7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남북교류협력법(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참조

3. 일상생활과 범죄 예방

1) 폭행 및 상해

북한이탈주민 범죄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 폭력사건이다. 북한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가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기보다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가 공민 개개인의 분쟁에 일일이 관여하지도 않지만, 설사 국가 기관에 요청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다 보니 제대군인이나 힘센 주변사람들을 동원하는 실정이며,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법은 폭력에 단호하다. 같은 폭력이라도 야간에 행사하거나 무리를 지어 위압을 가한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만일 분쟁에 휩쓸리게 되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법률적 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다. 폭력은 피해자와 합의로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벌 이외에 치료비 같은 민사상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폭행 및 상해와 관련된 형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도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얻는 범죄이다. 한국은 사유재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절도죄를 강경하게 처벌한다.

절도죄에 대한 형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본죄를 범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기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며 성립하는 범죄이다. 친구의 은행통장을 훔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은행원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아직 한국 실정에 어둡기도 하고,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많다. 친구의 은행통장을 훔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은행원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자를 높이 준다거나 하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큰돈을 거래할 경우 여러 번 고민을 해보고, 이 사람이 과연 값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사기죄에 대한 형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²⁴⁾라고 한다. 개인정보가 담긴 은행통장,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넘겨받은 통장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 할부금 등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수법이다. 휴대폰을 통해 통신요금 등의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은 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주는 것과 같다. 또한 이렇게 유통된 휴대폰은 일명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소액 결제 및 국제전화 등에 사용되어 요금 폭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타인이 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내 명의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란 중에 보안등급²⁵⁾을 설정하여 예방할 수 있다.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의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장(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에는 발급 금융회사에 즉시 거래(지급)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은행 영업점에 즉시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24)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인적사항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② 신체적 정보 :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몸무게, 의료진료 기록, 병력 등, ③ 정신적 정보 : 사상, 종교, 가치관 등, ④ 신용정보 : 금융거래 정보 등, ⑤ 사회적 정보 : 학력, 전과, 범죄기록, 상벌기록 등

25) 보안등급 설정 : 온라인 개통 허용 안함. 대리인 개통 허용 안함. 2회선 초과 개통 허용안함 등을 가입시 체크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www.kopico.or.kr, ☎02-405-5150)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서 취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 제33조 (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권리구제 기관과 절차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에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기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담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기초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리의 구제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후 후속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3215-5800)

가족문제, 소액재판, 돈거래 및 계약 일반, 형사사건, 임금체불 및 노동문제, 다단계, 소비자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진다. 전화 후 방문일자를 예약한다.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및 전문상담사

(☎ 우리생활 길라잡이 200페이지 참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을 조력하는 기관이다.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리 상담과 병행할 수 있으며, 후속조치를 조력한다. 상담절차는 전화 후 방문일자를 예약한다.

2) 권리구제 및 상담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원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최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이며, 법률상담과 조력을 받게 된다. 통상 법원, 검찰청 인근에 위치하며 전화 후 방문일자를 예약한다.

나. 대한변호사회(☎ 02-3476-4000)

대한변호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법률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력한다. 특히 대한변호사회는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법률구조에 협력하고 있다.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구제절차 관련 도움을 받는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선고, 수사과정 또는 형 집행과정에서 구금시설 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직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알립니다.

라.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우리생활 길라잡이 211페이지 참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① 진정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지급을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② 고소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경찰(☎국번없이 112) 및 검찰기관(☎1301)

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가까운 경찰(검찰)기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국번 없이 110, 1600-8172)

국민들의 민원서비스 통합창구로, 범죄신고 등 모든 민원업무를 지원한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방문한다.

■ 권리구제기관 연락처 ■

구분	구제절차	지원내용	전화번호 / 홈페이지	위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전화 상담/ 예약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법률사건 전반 (민-형사, 노동, 가사문제 등) 	02-3215-5800 www.dongposarang.com	서울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예약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문제 전반 상담 요건 해당시 형사사건 등에 국선 변호인 조력 	국번 없이 132 (핸드폰은 지역번호+132) www.klac.or.kr	전국 가까운 법원 검찰청 인근
대한변호사회(통일부와 업무협약)	전화 상담/ 예약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경제적 빈곤계층 조력 요건 해당시 무료번호 지원 * 지방변호사회 연락처는 『우리생활 길라잡이』 77페이지 참조 	(02) 3476-4000 www.koreanbar.or.kr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상담/ 예약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전반(인권침해 당한 사람 및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수가능) 재복시, 탈북과정에서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 접수 	국번 없이 1331 (핸드폰은 지역번호+1331) www.humanrights.go.kr	서울 을지로1가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진정 및 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시 권리구제 심사관 조사 후 명령/고발조치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3개월 내 신고 	국번 없이 1350 (핸드폰은 지역번호+1350) www.moel.go.kr	인근 고용센터 (우리생활길라잡이 참고)
수사기관 (경찰-검찰)	전화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범죄 혐의사실 조사(수사) 고소/고발 접수 외국인범죄/마약범죄/인권침해 접수 	국번 없이 112, 1301 사이버범죄 1566-0112 www.spo.go.kr(검찰청) www.kics.go.kr(형사사법포털) www.police.go.kr(경찰청) cyber112.police.go.kr (경찰청 신고포털)	전국 주거지 인근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상담/ 예약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전반 상담(성폭력, 학교폭력 등 일반범죄 신고 및 마약/사이버범죄/선거사범 등 신고) 	국번없이 110 /1600-8172 (핸드폰은 지역번호 필요) www.acrc.go.kr	서울 5호선 서대문역 인근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분쟁,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 민원 접수시 해결방안 제시 	044-200-4010 www.ftc.go.kr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4



Social Life

결혼과 가정생활

1. 건강한 사랑과 결혼

남녀가 만나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남한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남녀문제가 쉽지 않기에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다. 어떤 분들은 첫 눈에 반하는 짜릿한 느낌이 없다거나, 무책임하게 남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혼자만 애를 쓴다고 불평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있지만 전혀 친한 느낌이 들지 않다고 말한다. 모두 건강한 사랑의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텐버그(Sternberg, 1986)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랑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열정, 친밀감, 헌신 혹은 책임이 그것이다. 열정은 남녀가 처음 만나 첫 눈에 반했을 때의 신체적 반응과 같이 흥분된 느낌을 말하며, 친밀감은 정서적으로 서로에 대해 따뜻하고 친한 느낌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책임감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열정이나 친밀감 없이 개입만을 하는 사랑은 서로 간에 온화한 친밀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나 흥분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각자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부부와 같은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의무가 이들의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고 차가운 가족분위기로 인해 자녀들에게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쉽다.

친밀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열정에 빠져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지기로 결정한 상태의 사랑도 있다. 특히, 남한에 혼자 입국하였거나 남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면 의존할 누군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열정에 의한 남녀관계는 신체적 흥분상태를 유발하여 잠깐의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예전에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은 황홀감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열정이 시들어버리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을 받기도 쉽다.

따라서 남녀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따뜻하고 진심어린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건강한 남녀관계를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정 및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하루아침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은 힘들다. 성격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성숙한 사랑을 위해 남녀 모두 최선을 다 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남한의 성 윤리는 존중, 사랑, 책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사랑이 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나 연인을 포함한 모든 애정 관계에서 해당한다.

첫 번째 존중은 예를 들어 ‘나의 행동이 나와 상대방에게 모두 문제가 없는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을 때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성관계를 하자고 할 때 상대방도 동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다. 그 결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 윤리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면 나의 배우자나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면 나는 강간을 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 윤리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은 나의 소중한 몸, 상대방의 소중한 몸, 나 그리고 상대방의 소중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상대의 슬픔과 고통을 원하지 않고, 나의 슬픔과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감정이 있어야 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충동과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일방적인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책임은 ‘존중’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했고 사랑을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을 능력이 필요하다. ‘책임’은 후의 책임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뜻밖의 임신이라는 상황에 닥쳤을 때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의 도덕적 능력이 형성되었을 때 그제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성 윤리인 것이다.

2.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수치심, 죄책감, 강박감을 느끼게 되며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이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거나 자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혼자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면 학교나 직장생활, 일상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이에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성폭력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남한사회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므로 강간이나 성추행,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 어려우면, ‘여성 긴급 상담전화’인 1366이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전화하여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의논할 수 있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처럼 가해자가 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절차를 활용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다.

2) 성희롱

남한에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해결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를 입을 경우 직장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실에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성희롱은 북한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인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시각적인 성희롱, 그리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까지 네 가지의 유형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 표를 참고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성희롱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표 1〉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끌어안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동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 가정구성원 간 발생한 폭력으로 한 집에 사는 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은 흔히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비롯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것, 말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상해가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경우에는 재판부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시킬 수도 있다. 보호관찰이나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을 집안 문제로 보게 되면 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알리는 것이 두려울 경우에는 ‘여성 긴급 상담전화’인 1366이나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에 전화하여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대처 방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바로 조치를 취하고 싶으면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3. 행복한 가족이란?

한국에서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가족단위로 남한에 함께 입국한 것도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남한에서 가족이 건강하고 잘 기능하려면 가족끼리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친밀감이나 애정,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가족 간에 소통을 나누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이나 자녀만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안에 가해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제적일 경우 가족은 서로 상처를 주고 해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끼리 언어나 신체언어(예: 눈빛, 목소리, 손짓, 표정 등)를 수단으로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뜻한다. 건강한 가족끼리의 의사소통은 분명하고 진실 되며 자신의 생각, 느낌, 의견을 다른 가족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의사소통을 한다면 기분 나쁜 일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한 가족끼리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어 있거나, 일방적이며, 무시, 비난, 공격,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숨은 뜻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취한다. 의사소통이 불분명하며 일치하지 않고 왜곡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대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제3국 체류 가족과의 재결합, 이혼과 재혼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가족구성원도 복잡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는 없다. 만약 남한에 와서는 “내 남편(아내), 딸(아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할 경우, 가족 한 사람이 남한생활에서 경제적, 사회적, 학교 및 직장적응 어느 한 부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끼리의 상호작용이 서로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4. 바람직한 가족관계

1)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결혼을 실패로 이끌 수도 있고,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으며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또한 부부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부관계 특성이 어떠한 지 살펴보고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부부관계는 서로 공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경우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받기만 원하고 또 한 쪽 배우자는 기꺼이 희생하며 주기만 한다거나, 한쪽은 지배적이고 한쪽은 복종적이기 보다는 지배적 위치를 서로 교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생존을 위해 제3국에서 결혼한 경우나 결혼 전 가족의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듯 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부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능성이 있다. 이때 부부가 서로 결혼에 대한 동기를 이야기해보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봄으로써 결혼에 대한 기대가 부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수 있겠다.

둘째, 부부의 성생활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성적 만족도는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생활에서 중요한 성 차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부부간의 성에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도 서로 어떤 성 행위를 좋아하는 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말해보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존중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 만족도는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지금까지 성에 대한 지식이나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남한의 여러 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다양한 성교육 관련 강좌를 듣고 부부간의 관계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활용해보도록 하자.

2) 부부 간 의사소통

부부 간의 의사소통은 안정적인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부부 간의 믿음은 서로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발전되며 부부 간에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부부 갈등이나 다툼이 심하고, 매사에 경쟁적이고 의견충돌이 잦게 된다. 서로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 중요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3

순명씨는 40세로 2년 전에 남편, 아들과 함께 남한에 입국한 여성이다. 1년 전부터 남편은 막일이 힘들고 남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면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순명 씨에게 자주 한다. 반면 순명 씨는 남한에 와서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남편보다 수입도 많고, 남한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다. 식당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꼬박꼬박 늘려나가려는 계획에 남한생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데 비해, 남편은 대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만 많다. 순명 씨나 아들에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자주 화를 내고 탈북자 친구들과 폭음을 하고 돌아오는 날들이 많아졌다. 이런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남한남자들과 비교하여 무능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해서 요즘 순명씨는 가슴이 답답하다(출처: 조영아, 김현아, 김연희, 2012).

사례 3은 문화적 적응속도의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다. 즉,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쉽게 조언을 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남한에 와서 서로 바뀌게 되면 지위변화로 인해 불안해진 배우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부부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사고가 강했던 남성이 취업이 불안정하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어 자신의 권위나 역할이 축소되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될 때, 그로 인해 더 권위적이 되거나 사소한 일로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등의 공격적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가부장적 아버지의 역할을 고수하려고 하나, 여성이나 자녀들은 남한의 언어나 사회 문화를 쉽게 수용하고 동화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나 도움을 주는 사람과 담당기관을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었지만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이 북한에서보다 더 많은 경제활동과 부를 가지게 됨으로써, 가치가 높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남성은 더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를 훈계, 비난, 의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함께 도와준다거나, 다른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주는 상호소통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은 남성이 갑작스럽게 바뀐 가족의 역할이나 남한사회의 적응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3)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탈북 청소년들은 그러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남한친구가 많고, 수업시간의 집중도도 높으며, 남한사회 지식을 더 즐겁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혜, 정익중, 박윤숙, 원미순, 2003).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부모-자녀 간 갈등은 경제적,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부모자녀가 함께 겪는 것(최대현, 이인수, 김현아, 2007)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고 부부관계가 화목하면, 자녀가 부모처럼 행동하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부부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역할에 공백이 생기면서 가족의 체계가 무너지고 부모 자신의 문제나 상처를 자녀에게 화풀이 하면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부모-자녀의 남한입국 시기가 차이가 나서 부모가 먼저 탈북한 경우,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과거에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관계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 인 경우 부모-자녀 간의 세대 간 갈등은 더 커진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의 청소년기 특징을 잘 이해해야한다. 남한사회에서 변화에 적응력이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 자녀들과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장년층인 부모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소통하여 자녀에게 어떤 대화의 기회도 주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녀의 말을 무시하거나 비난(예: “네가 공부를 못하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내 생활이 엉망이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밖에 못해?”) 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밖에도 칭찬이나 자녀에 대한 인정 없이 비난만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 절하하는 말투, 자녀가 화를 낼 까봐 비위를 맞추거나 부모만 일방적으로 참아야한다는 소통 방식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 의견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하며,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가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나 자녀를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주어야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말이 어려우면 글로 써서 전달하거나, 토닥 거려주기, 안아주기와 같은 사랑과 인정을 상징하는 신체적 표현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표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를 적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5.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발달시기별 특징 이해

1) 부모의 역할

부모역할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부모-자녀간의 대화나 자녀지도 등을 포함한다. 부모역할을 통해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는데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남한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믿어줄 때 자신감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이 임신에서부터 출생 이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은 어머니다. 어머니를 통해 슬픔, 공포, 불안, 미움, 사랑, 믿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받고 접촉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부모역할은 어머니의 역할 뿐 아니라 남한에서는 아버지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버지가 자녀와 많이 놀아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녀가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성이 길러진다거나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며 학업, 직업,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의견이 강할 경우, 딸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어머니의 의견이 강할 경우,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2) 자녀의 발달적 특징에 따른 부모역할

가. 임신과 출산시기의 부모 역할

태아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먼저, 태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이므로 균형 있고 적절한 양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신경안정제, 수면제, 종합 호르몬제, 피임약 중 일부의 경우도 유산이나 기형, 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태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어머니의 정서가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안정을 통한 태교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이후에 산모는 산후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나. 영아기(1~3세)의 부모역할

에릭슨(Erikson)이라는 발달심리학자에 의하면, 영아기 때 인간이 주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과 불신감, 자율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주도록 한다. 부모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다거나, 불편하다고 울더라도 즉각 처리 해주지 못하거나, 불안정하게 애정을 줄 경우 자녀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싫어!’와 같은 표현을 많이 하면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는 고집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 이때 부모가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잉해서 보호할 경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이 길러지지 않고 수치심을 많이 느끼거나 자신감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다. 유아기(4~12세)의 부모역할

주도성과 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영아기 때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주도적 하고자 하는 행동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만약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엄하게 훈육을 하고 비난하게 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쉽게 자기 탓을 하거나 죄책감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질문이 많아지면서 ‘이게 뭐예요?’라고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는 시기인데 이때 부모는 자녀의 지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성의 있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아기의 다양한 체험이나 학습경험을

제공해준다면 아동의 주도성과 자유로운 탐색을 촉진시켜 부모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녀에게 애정 없는 처벌,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민주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학교에서 지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학업스트레스, 불안, 친구문제, 탈북자라는 편견 등으로부터도 훨씬 잘 대처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라. 청소년기(13~18세)의 부모역할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목소리가 바뀌는 변성기, 수염, 생리, 가슴 등과 같은 생리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와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 탈북을 하여 남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남한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체격, 다른 말투, 따라갈 수 없는 남한의 공부 등으로 인해 자녀들을 위축되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부모나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들이 중요한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놀리거나 무시하는 반응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고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한친구들의 최신 유행의 옷과 몸치장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따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별히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 문화적응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이성에게 집착할 수도 있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면서도 인정받고 싶으며, 또한 부모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래친구들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심이 커진다.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대립된 행동을 하고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남한에 온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거나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청소년 시기의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방안

1)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 방식은 남북한의 차이가 있다. 북한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습부분에 있어 “자기 혼자 알아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공부에 대해 “공부를 잘 하라”는 말은 해도 “어떻게 해라”거나 자녀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민무숙, 안재희, 2001; 최대현 외, 2007 p. 278 재인용).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북한식 엄한 훈육 방식을 할 때에도 부모-자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가 책임을 주는 양육방식, 엄한 훈육방식이 북한의 양육태도라면 남한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부모의 지원과 개입,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 4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방임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4

명옥씨는 40대 초반의 여성이다. 지친 표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이야기를 하며, 간간히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명옥씨는 세달 전에 북한에서 헤어져 큰 아들을 남한으로 입국시켰다. 세달 전 입국한 큰 아들의 입양이 가능한지를 묻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하였다. 명옥씨는 큰 아들 외에 중국에서 낳은 작은 딸이 한명 더 있으며, 1년 전에 남한 출신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집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명옥씨는 큰 아들을 보면 속이 터지고 답답하며,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호소한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학업도 못 따라가고 컴퓨터만 몰두해 있는 것에 속이 탄다. 아이를 나무래 보지만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눈치만 살핀다고 한다. 아이를 남한에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대신 돌봐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출처: 조영아 외, 2011).

남한에 데리고 올 때는 힘들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남북한 문화적 차이와 기대만큼 자녀가 학업이 우수하거나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데려오기까지의 희생과 노고가 있지만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실망감의 극단적 표현인 것이다. 이는 자녀를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불안정한 애착형태와 부모 노릇에 대한 남북한 개념 차이,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싶은 심리적 변화가 통합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탈북이라는 쉽지 않는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이때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삶을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비현실적 기대감이 문제인 것이다.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롭게 배우고 경제적 성취감을 찾는다면 훨씬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5

순미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여성이다. 순미씨는 상담자를 만나서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시킨 순미씨 아들을 학교에서 한글을 잘 모른다고 장애아동 반에 배정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알림장을 통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할 때에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한다. 화나는 것을 참고 전화로 한바탕 담임선생님에게 항의하기는 했으나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잘 따라가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는 아들에게 화가 나서 아들을 몰아세우고 마구 때리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를 타일러 보지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연락이 오면 화가 나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출처: 조영아 외, 2011).

사례 5는 남북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탁아소에 보내져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집단 보호 시설(입양 및 후원, 쉼터, 대안학교 등) 의뢰가 문제시 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는 엄하게 훈육하는 양육방식이지만, 남한에 오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하고 학부모가 많이 관여하게 되는 형태의 자녀양육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부모 당사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남한의 부모와는 다른 부모의 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2) 자녀양육 스트레스 관리

남한생활 기간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권장한다.

- 지역사회 배치 후 자녀의 등교시간, 교과과목, 학교 행사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 자녀 연령이나 유사 자녀문제를 지닌 학부모들끼리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자.
- 자녀가 남한의 학업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방과 후 학습지원 및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
- 특히, 한 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의 취업으로 자녀가 홀로 있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자녀의 문제(예: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왕따)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 참고문헌 ◀

- 김현아, 정성란(2008).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 연구, 9(3), 1333-1356.
-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2012).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 분석 및 지원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연구총서 2012-4).
- 쭈박현선(2003).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조영아, 김현아, 김연희(201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사회적 상담 매뉴얼. 서울: 국제이주기구(IOM).
- 최대현, 이인수, 김현아(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홍순혜, 정익중, 박윤숙, 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연구. 서울: 통일부.

5



Social Life

주요 도시 이해

1. 한반도에 대한 이해

1) 지리적 위치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중국과 함께 북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된다. 수리적으로는 북위 33도~43도, 동경 124도~132도 사이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의 중심인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북쪽 지역, 유럽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표준시간인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는데 영국이 정오 12시라면 한국은 오후 9시가 된다. 아시아에는 전 세계인구의 60%인 약 45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남동해안-한반도-일본에 이르는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하나로 꼽힌다. 남북한을 합한 전체면적은 22만 km^2 이며 남한 10만 km^2 , 북한은 12만 km^2 이다.

〈그림 1-1〉 세계지도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반도(半島)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한반도로 부르는 이유이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는 바다로 진출하려는 대륙(유럽, 아시아) 세력과 육지로 진출하려고 하는 해양세력(일본)이 부딪히는 지점에 위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력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많이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반도의 정중앙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섬까지 포함하는 4개의 극점(極點)을 기준으로 하면 정중앙은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이다. 4대 극점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동),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서),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남),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북)을 말한다.

〈그림 1-2〉 한반도 및 국토정중앙



2) 지형 및 기후

한반도의 나이는 약 30억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 많은 조산활동(造山活動), 지각변동(地殼變動) 등을 거쳐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형이다. 동쪽에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과 같은 높고 거대한 산맥들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이로부터 발원(發源)한 강들이 동해로 흐르는 두만강과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형이 낮은 서쪽으로 흘러 서해(황해)로 유입되고 있다.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강들은 바다와 만나는 하류 지역에 커다란 평야지대를 만들어 일찍 부터 농업이 발달하게 하였으며 유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강 유역을 따라 커다란 도시가 발전해 왔다. 또한 동고서저형 지형으로 인해 도로나 철도 같은 주요 교통망도 주로 남북방향으로 발전했으며 큰 산맥을 따라 東西地域 사이에는 언어, 음식 같은 문화의 차이도 나타났다.

한편,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고 건조한 반면 여름에는 바다(태평양)의 영향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는데 이렇게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부른다. 또한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며 편서풍 영향으로 일년 내내 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봄에 중국으로 부터 많은 양의 황사가 몰려오는 것도 이 편서풍의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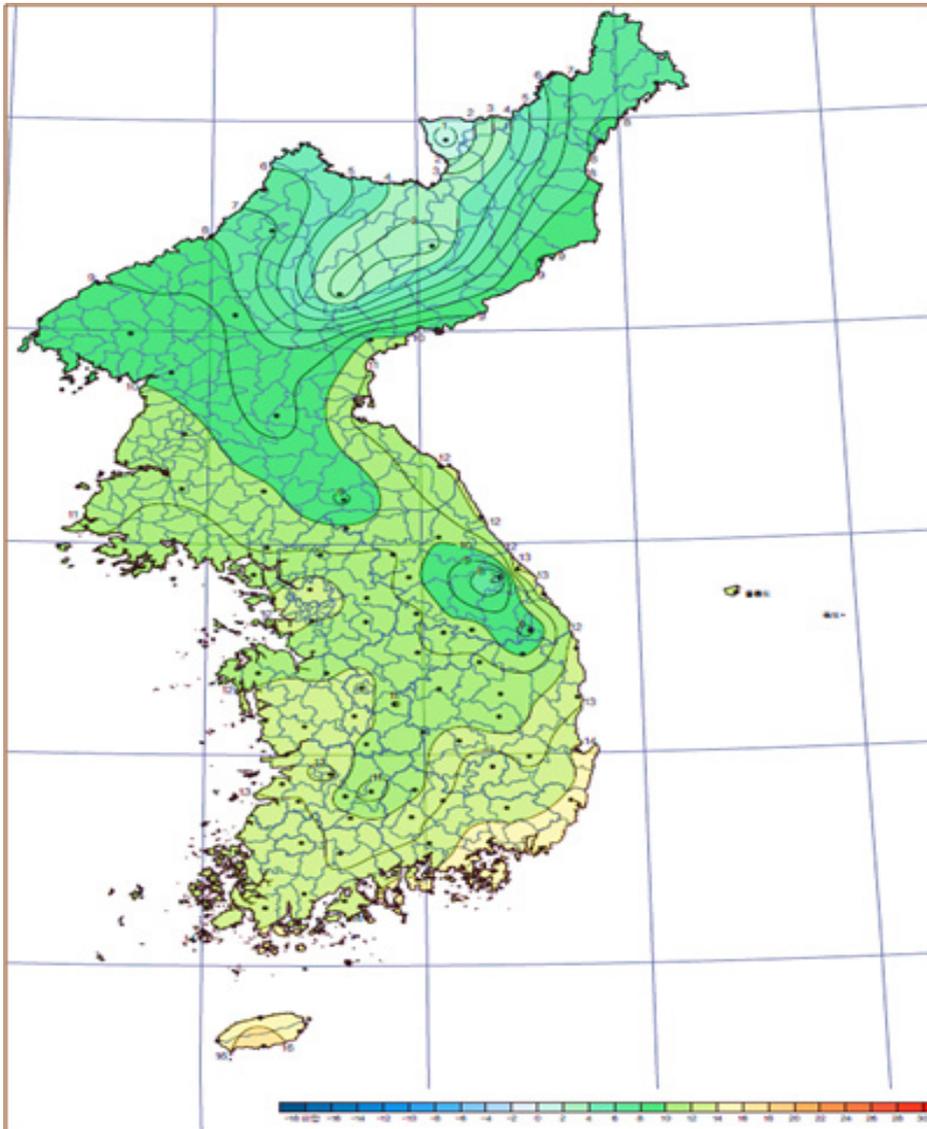
남한의 연평균 기온은 약 10~15도 정도인데, 가장 더운 8월에는 약 23~26도, 가장 추운 1월에는 6~-3도 가량으로 차이가 크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연평균 약 4도 정도가 낮으나 겨울에 연평균 -7도 정도로 특히 춥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자강도의 중강진 지역으로 1월 평균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반면 가장 더운 곳은 대구로 8월 평균 25도에 이른다. 같은 위도에 위치함에도 내륙 쪽이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더운 이유는 바다에 비해서 육지가 빨리 더워지고 빨리

〈그림 1-3〉 한반도 지형도



식은 성질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온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 온대기후에서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대지역 과일인 사과의 생산지가 과거 대구 주변지역에서 점차 강원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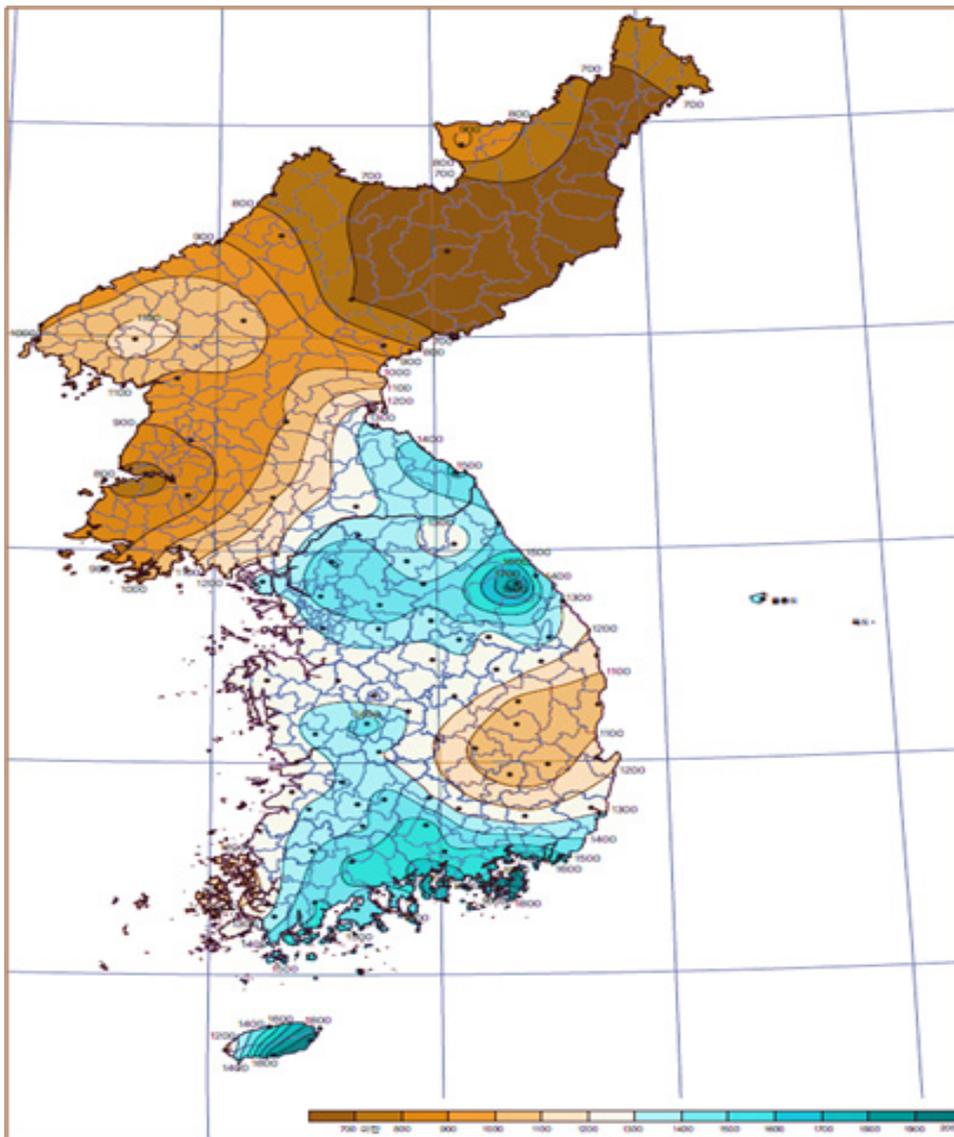
〈그림 1-4〉 연평균 기온 분포도



한편 남한의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 북한은 약 920mm 정도인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제주도, 남해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 금강산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으나 대부분의 북한지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지역은 매우 낮은 편인데 특히 함경도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불과

700mm 미만이다. 매년 7월~9월에는 집중되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으로 인해 한반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평양의 필리핀 근처에서 발생한 후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과 일본열도를 통과하지만 그 세력권이 매우 커 중부와 북부지방에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림 1-5〉 연평균 강수량 분포도



3) 교통망

남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33개 노선, 총 연장 약 4천km, 국도는 51개 노선, 총 연장 약 14만km가 넘는다. 1960년대 경제발전 초기에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등 남북방향의 도로가 주를 이루었으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전국을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빠르게 건설되었다.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해 서울-부산 4시간 30분, 서울-광주 3시간 30분, 서울-대전은 1시간 30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1-6〉 전국 고속도로망도



한편 철도는 전국 39개 노선이 운영중이며 특히 전국을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급행열차(KTX)가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서울-광주) 및 전라선(서울-여수) 노선에 운행중이다. 또한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 지하철이 운행중이며 서울, 인천을 비롯한 주변 주요 도시를 잇는 수도권 광역전철(지하철)망이 건설되어 도시간 교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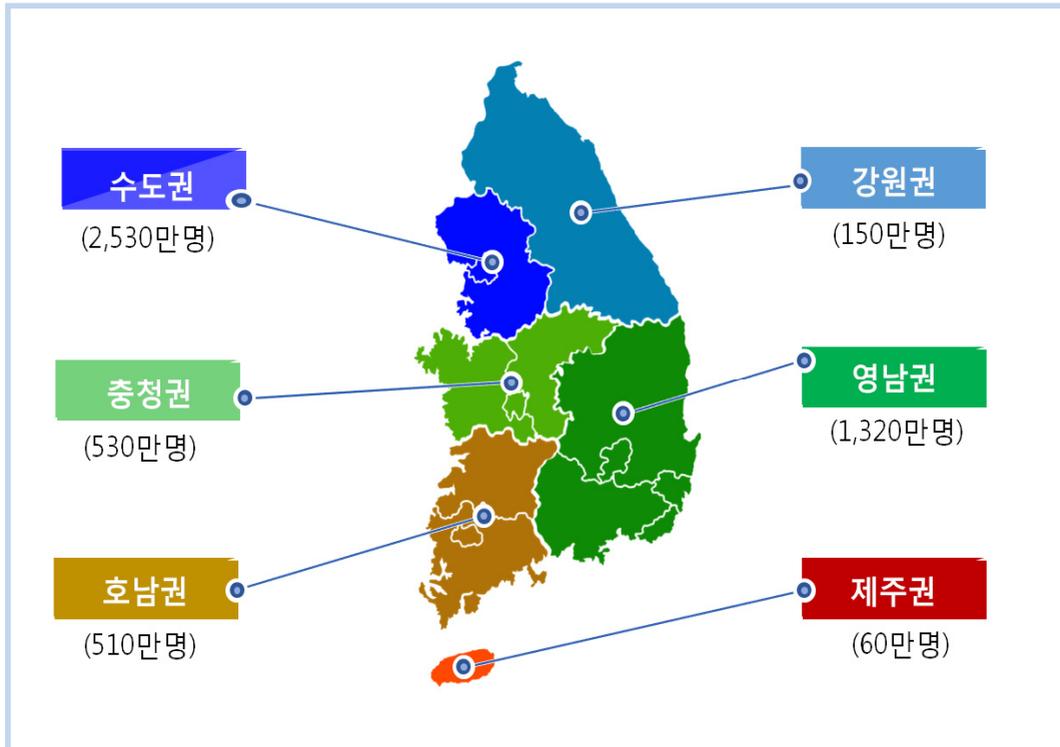
〈그림 1-7〉 전국 철도망도



2. 남한의 인구, 사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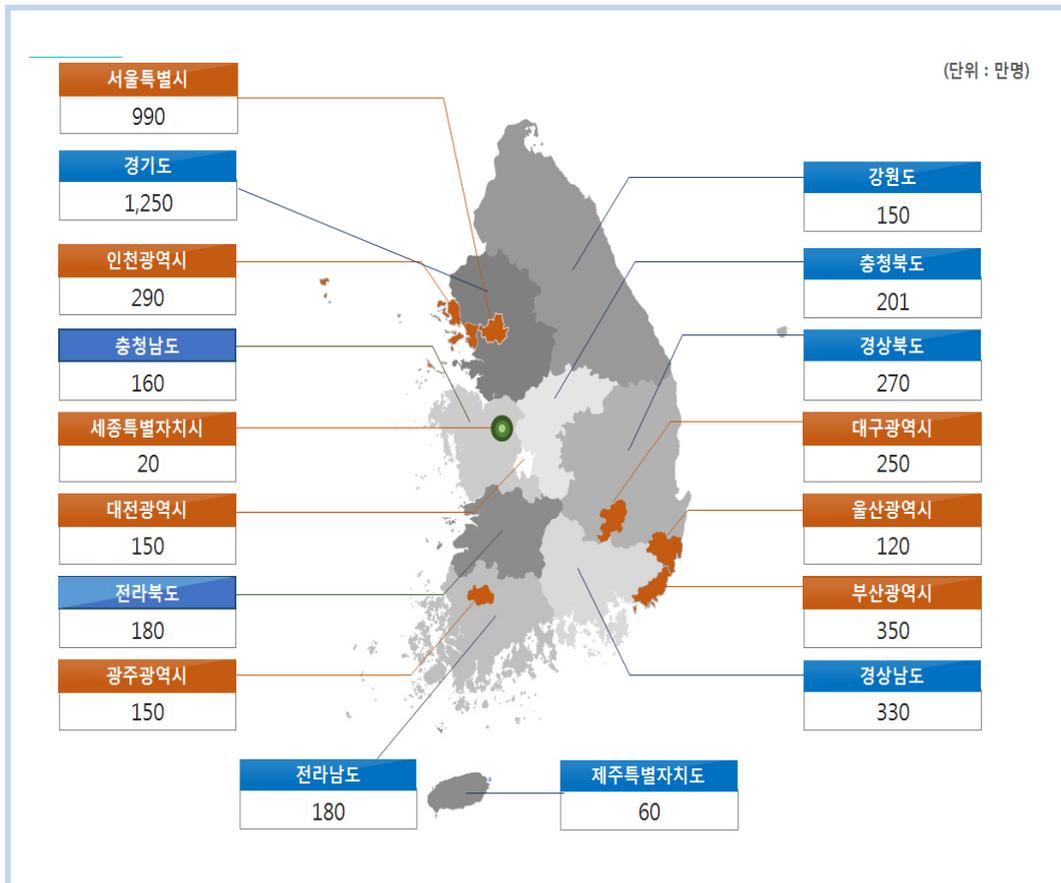
2015년 기준 남한의 인구는 5,100백만명으로 북한의 2,400백만명을 합치면 남북한 인구는 약 7,500만명이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1,250만명, 서울시에 990만명이 거주한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 전체 남한 인구의 약 50%인 2,530만명, 그 다음으로 영남권에 약 25%인 1,320만명이 거주하며 그 밖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각 10% 정도, 제주도에는 가장 적은 60만명, 강원도에 150만명이 거주한다. 과거 5년간 남한 인구는 약 5% 증가하였는데 영남권과 서울시의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 비율은 약간 상승하였다. 남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36만명으로 지난 5년간 약 1.3배 늘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에서 2.7%로 증가하였다.

〈그림 2-1〉 생활권역별 인구수



남한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서울), 1개 특별자치시(세종), 6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개 도(경기, 강원,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1개 특별자치도(제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산하에는 기초자치단체로 각각 구(區,)와 시(市), 군(郡)이 있는데 시, 군의 수는 155개이다.

〈그림 2-2〉 행정구역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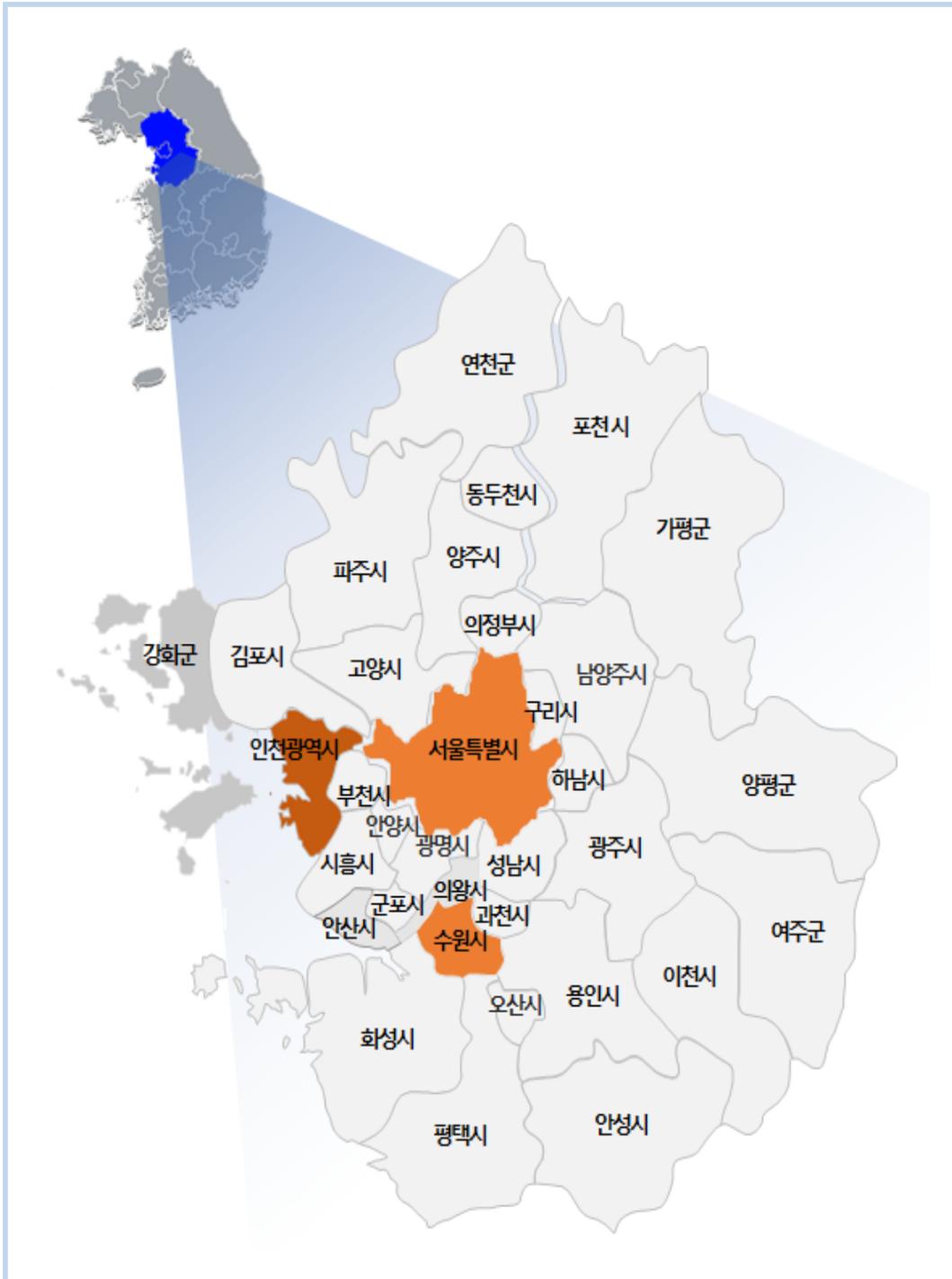
3. 주요도시 소개

1) 수도권

수도권(首都圈)이란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며 면적은 남한 전체면적의 11%인데 비하여 인구는 전체의 50%인 2,530만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본사, 대학교, 금융기관 등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도 수도 인근지역에 대도시권이 존재하나 한국의 수도권의 집중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기업체의 집중으로 인해 주택부족,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동시에 지방에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또한 충청지역에는 세종시를 건설하여 정부 공무원과 연구기관들을 대거 이전하게 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을 지형적으로 보면 가평, 연천, 포천, 남양주 같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는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양평에서 강원도에서 흐르는 북한강과 충청도에서 흐르는 남한강이 만나 서울을 관통하여 파주에서 임진강과 합쳐져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한강 주변에는 김포평야, 여주평야 등 큰 평야가 분포하고 있고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청계산 등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1〉 수도권 주요 도시



■ 서울

서울은 조선시대에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약 600여년 동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뒤로는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좌우로는 인왕산과 낙산 등을 끼고 있어 산세가 수려하고 앞으로는 한강이 흘러 풍수지리(風水地理)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으로 꼽혀왔다. 한강을 이용한 물자의 운송이 원활하고 한강 유역의 너른 땅이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필요한 공장용지, 주거지 건설을 위한 토지로 활용되었다. 60년대 경제발전 초기에는 강북지역이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1970년대 이후에는 강남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서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시 인구는 2010년 1,070만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비싼 주택가격과 높은 물가 등으로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인접한 경기지역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대규모 신도시들이 건설됨에 따라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5년 기준으로 약 9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는 전통적으로 행정 관청, 은행, 백화점, 대기업의 본사, 호텔 등이 집중된 중구, 종로구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심 기능이 세분화 또는 분산되면서 부도심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강남, 영등포, 신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시설, 벤처산업이 집중되어 서울시에서 평균 땅값과 아파트 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림 3-2〉 서울시 전경



〈그림 3-3〉 서울시 야경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다. 영종도에 인천 국제공항이 있고 인천항을 통해서도 많은 물자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 국제공항은 시설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수년간 세계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 인천은 제물포항으로 출발하여 조선 후기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 의해 일찍 개항되어 국제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4단지~6단지, 1990년대 이후에는 남동공업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수도권핵심 공업도시로 도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고속도로, 철도 등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경제자유구역, 공항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인구는 290만명.

〈그림 3-4〉 인천항



■ 수원시

경기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청 소재지로 행정, 문화, 교육 중심지이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으로 서울과 직접 연결되며 경부선 철도, 경부·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수원성 등 조선 왕조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많아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관내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비롯하여 수원지방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기, 전자 분야 등에 3,700업체, 약 3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경기대, 아주대, 수원대 등 10여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는 120만명.

〈그림 3-5〉 수원시



■ 성남시

서울시 남쪽에 위치하며 분당, 판교, 위례 등 신도시가 집중 개발되면서 수도권의

신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분당선, 신분당선, 8호선 전철이 통과하며,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지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는 성남 일반산업단지 등에 4,100개 업체가 소재하고 여기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4만1천명이다. 가천대, 동서울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95만명.

〈그림 3-6〉 분당 신도시



■ 용인시

경기남부 지방에 위치하며 시의 서쪽지역은 수지, 동백, 기흥 등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지해 있고 중부, 동부지역은 하천유역 및 구릉지를 따라 농경지와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국내 최대 놀이동산인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으며 영동고속도로가 중앙을,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을

지나고 있고 분당선 및 신분당선 전철이 시의 북서쪽을 통과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약 3,100여개이고, 명지대, 용인대, 단국대 등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인구는 97만명.

■ 광명시

서울시 남서지역과 접한 교통의 요지이다. 연간 35만대 생산능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비롯하여 광명시범공단 등을 중심으로 관내에 약 1,700여개 제조업체에 1만 5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로 서울과 직접 연결되고,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전철 1호선 종점 및 KTX 광명역사가 위치해 있으며 역사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및 물류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인구는 34만명.

〈그림 3-7〉 KTX 광명역사



■ 안양시

서울시 남서쪽 금천구와 접하고 있으며 안양천이 중앙을 관통하여 북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유입된다. 1980년대 후반 서울주거난 해소를 위해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철 1호선,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며 관내 4,000여 제조업체에 약 3만6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안양대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인구는 59만명.

■ 시흥시

서해안 시화호를 중심으로 발전한 공업도시로 서쪽으로 인천광역시와 접한다. 1980년대 조성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조립·금속·기계·화학 등을 중심으로 관내 1만1천개 제조 업체에 약 8만 9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배곧 신도시, 은계, 등 신주거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해안·영동·평택-시흥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지하철 4호선으로 서울과 연결된다. 한국 산업기술 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43만명.

■ 안산시

시화호 유역, 서해와 접한 평야지대에 위치하며 1970년대 후반 서울에 집중된 인구나 산업의 분산을 위해 개발된 계획도시이다. 반월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단지 등에 조립금속, 정밀화학, 자동차 기계부품, 전자 전기부품 등을 중심으로 관내에 5천여 제조업체에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75만명.

〈그림 3-8〉 시화공단 야경



■ 화성시

경기 남서부에 위치하여 서쪽은 화성호 유역을 중심으로 서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수원시와 접하고 있다. 동측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동탄과 남측 향남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삼성반도체공장이 입주한 화성일단산업단지 외 10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관내 1만 5천여개 제조업체에 약 19만 2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격자형으로 통과하는 등 교통 여건이 매우 좋다. 인구는 61만명.

〈그림 3-9〉 동탄 신도시



■ 평택시

경기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동측은 경부고속도로에, 서쪽으로는 서해와 접하고 있다. 안성천이 시의 중심부를 흘러 아산호를 거쳐 아산만으로 유입되며 평택평야를 활용한 농업이 발전하였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덕산단, 엘지전자가 입주한 진위2산단 등 10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입지하는 등 경기 남부권 최대 공업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는 3,400여개, 근로자수는 약 7만 8천명이며 경부, 평택-제천, 평택-화성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등이 있으며 인구는 46만명.

■ 부천시

동측으로 서울시, 서측으로 인천광역시와 접하고 있다. 서울 근교 농업과 공업 지역이 혼재되어 도시가 성장하였으나 중동신도시 등 새로운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공구상가, 아파트형공장,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존 공업지역이 만화, 영화, 영상 등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되면서 도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1만1천개, 근로자 수는 약 7만 3천명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중앙을, 외곽순환소고도로가 좌측을 통과하며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난다. 부천대학, 카톨릭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84만명.

■ 김포시

서울 서측 한강 하류에 위치하며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유역을 따라 김포평야 등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다, 학운 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내 5,900여개 제조업체에 약 6만 5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2011년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아래뱃길이 준공되어 물류관련 산업발전이 기대되며 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로 통행이 편리하며 인근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다. 330만평 규모의 한강 신도시를 비롯하여 검단 신도시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35만명.

■ 고양시

서울의 북서 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에 접한다. 자유로,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3호선 전철로 서울 도심까지 직접 연결된다. 한강 유역을 따라서 발달한 넓은 평야를

이용한 대도시근교농업이 활발하다. 일산신도시, 삼송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 또는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 중의 하나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4,800개, 근로자수는 약 2만 8천명이다. 한국항공대학교, 중부대, 농협대학교 등이 있으며 인구는 99만명.

〈그림 3-10〉 일산 신도시



■ 파주시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 남쪽은 고양시, 북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북한의 개풍군과 접하고 있다. 북동쪽에서 흐르는 임진강과 남쪽에서 흐르는 한강이 탄현면 지역에서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된다. 파주출판단지, 파주 LCD 단지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관내 4,000여개 제조업체에 약 6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또한 약 500만평 규모의 운정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문산역까지 운행 중이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가 운정신도시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 밖에 통일로, 자유로, 제2자유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인구는 42만명.

〈그림 3-11〉 자유로



■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역 행정, 경제 중심지로 경기 북부청사가 소재해 있다. 수락산, 도봉산이 동서로 둘러싸고 있고 중앙으로 중랑천이 남쪽으로 흘러 한강과 합류한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군사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기지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민락지구 등 대규모 신시가지와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용현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관내 제조업체는 약 1,300여개이며 6,8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경민대, 신한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는 42만명.

■ 남양주시

경기도 동부에 위치하며 좌측으로 서울시 동북지역과 구리시와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북한강, 한강이 흐르고 있다. 동부는 산지지역, 서부는 왕숙천을 따라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다. 광릉테크노밸리, 금곡일반산업단지 등에 550개 제조업체가 소재해 있고 약 1만2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별내, 다산 등 신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간고속도로, 경춘선 철도 등 서울은 물론 수도권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구는 63만명.

2)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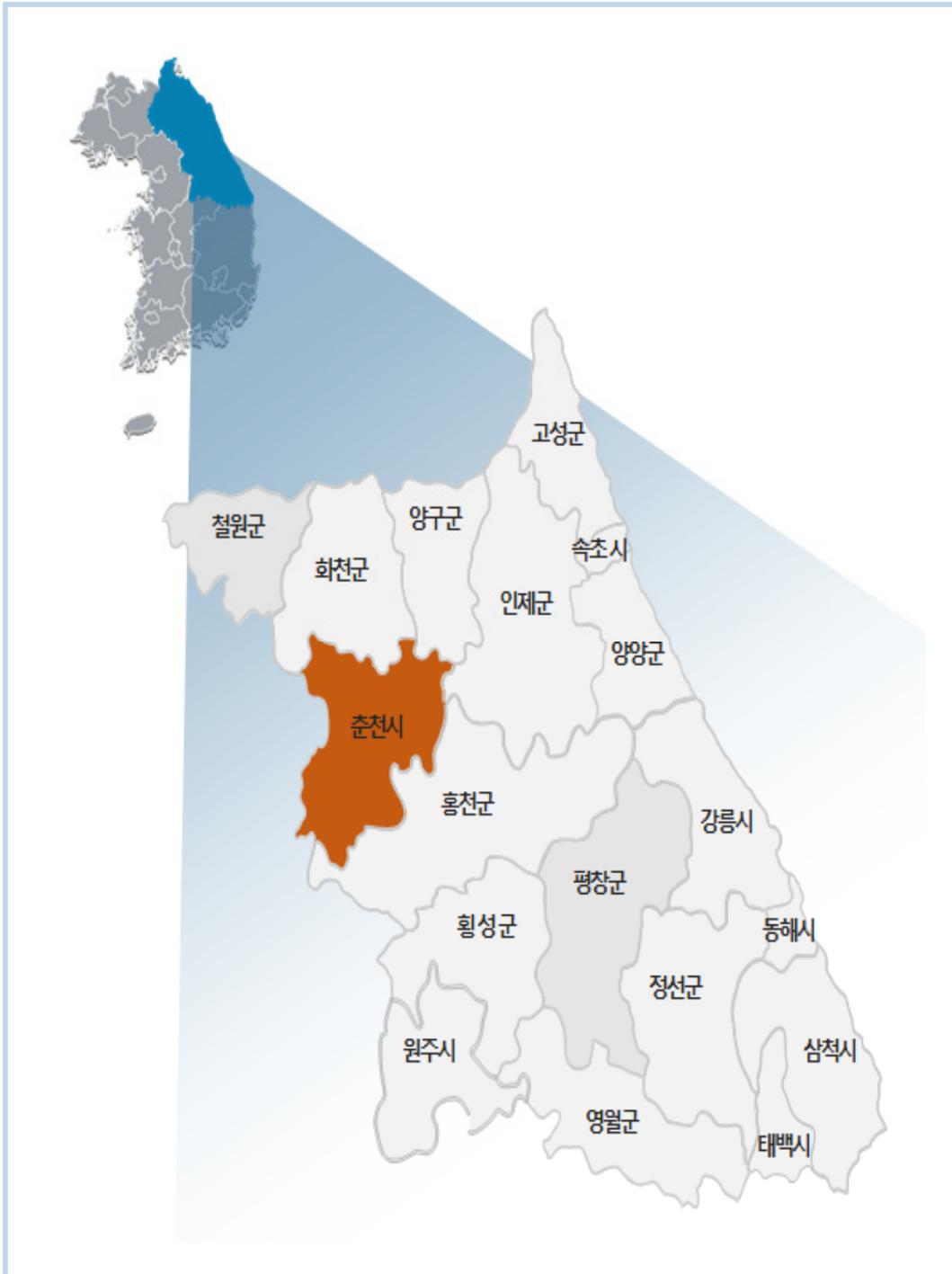
강원도는 면적은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는 150만명으로 9개 도 중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작다. 강릉과 원주의 첫 글자를 따서 강원도로 불린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남한에서 대표적인 관광, 휴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양 지역은 기후와 언어, 생활습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대관령, 한계령 등 험한 고개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1970년 서울-강릉 간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일일생활권에 편입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수도권에서 철도, 도로가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영동지역은 태백산맥과 동해 바다의 영향으로 영서지역에 비해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하며 영서지역은 산업과 산지를 이용한 고랭지 농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그림 4-1〉 대관령



〈그림 4-2〉 강원권 주요 도시



■ 춘천

춘천은 강원도 도청이 소재하는 도시로 영서지역의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다. 특히 댐과 호수가 많아 호반의 도시라고도 불리운다. 전력 생산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된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과 이로 인해 생긴 의암호, 소양호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음악, 연극 등 사계절 내내 관광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춘천에서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되고 이는 경기도 가평, 청평을 거쳐 양평에서 남한강과 만나 서울로 흐른다. 경춘선(철도) 복선화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등 편리해진 교통덕분에 1시간대에 서울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중 춘천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도 점차활성화 되고 있다. 제조업체 수는 1천개로 약 6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강원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이 소재한다. 인구는 28만명.

〈그림 4-3〉 의암호와 춘천시



■ 원주

강원도에서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이다. 군사사령부와 미군부대 등이 있어 군사도시로 불리었으나 시내에 있던 군사시설이 단계적으로 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중앙선 철도,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부터 교통이 편리하여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있다. 또한 남원주 역세권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강원도 내에서 가장 먼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악산, 섬강, 한지 문화재 등 관광산업도 발달해 있으며 관내 제조업체 수는 1,600개, 종사자 수는 약 1만 7천명이다. 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소재하며 인구는 33만명.

〈그림 4-4〉 원주 혁신도시



■ **횡성, 평창**

고위평탄면(대관령 서쪽으로 해발 700미터 이상의 고지대가 넓게 분포한 지역)을 이용하여 무우, 배추 등 고랭지 농업과 한우 등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평창에서 2017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전철, 고속도로, 국도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더욱 확충되고 있어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나 횡성군에 320개 업체에 약 3,5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평창군에는 220개 업체에 약 1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인구는 횡성 4만3천명, 평창 4만명.

〈그림 4-5〉 평창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



■ 영월, 정선, 태백, 삼척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석회석, 텅스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광산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1980년대까지 크게 발전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가정용 연탄의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상승 등 석탄산업 여건이 악화 되면서 폐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업자 증가, 인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선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와 대규모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영월 동강, 정선 아우라지 같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석탄산업 관련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인구는 영월 3만7천명, 정선 3만7천명, 태백 4만7천, 삼척 7만명.

〈그림 4-6〉 영월 동강과 영월읍



■ 철원, 화천, 인제, 양구, 홍천

이들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군사도시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상대적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위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신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 이 중에서 철원은 후고구려 도읍지로 한탄강이 흐르고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벼농사 등 농업생산이 활발하다. 철원과 양구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국도 43호선, 국도 31호선으로 북한과 통행이 가능해 남북관계 호전시 도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홍천은 직접 휴전선을 접하지는 않지만 후방 군사 시설이 많아 역시 군사도시 성격이 강하며 홍천강 유역을 따라 농업도 발달해 있으며 농공단지 등에 340개 제조업체에 약 2,5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인구는 철원 4만 6천, 화천 2만5천, 인제 3만1천, 양구 2만2천, 홍천 6만7천명.

〈그림 4-7〉 철원평야



강릉

강릉은 영동지역의 행정, 문화 중심지이다. 오죽헌, 선교장, 단오제, 커피축제, 경포대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성장이 다소 정체되어 있었으나 평창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구 증가 등 도시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1,200개이며 약 6천 4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인구는 22만명.

속초

설악산, 동해바다, 청초호 등 호수를 끼고 있어 전체 산업의 75%를 관광 관련 산업이 차지할 정도로 관광 중심도시이다. 북한을 떠난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여 있는 아바이 마을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출발지로서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2008년 관광 중단과 함께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인구는 8만명.

〈그림 4-8〉 속초 아바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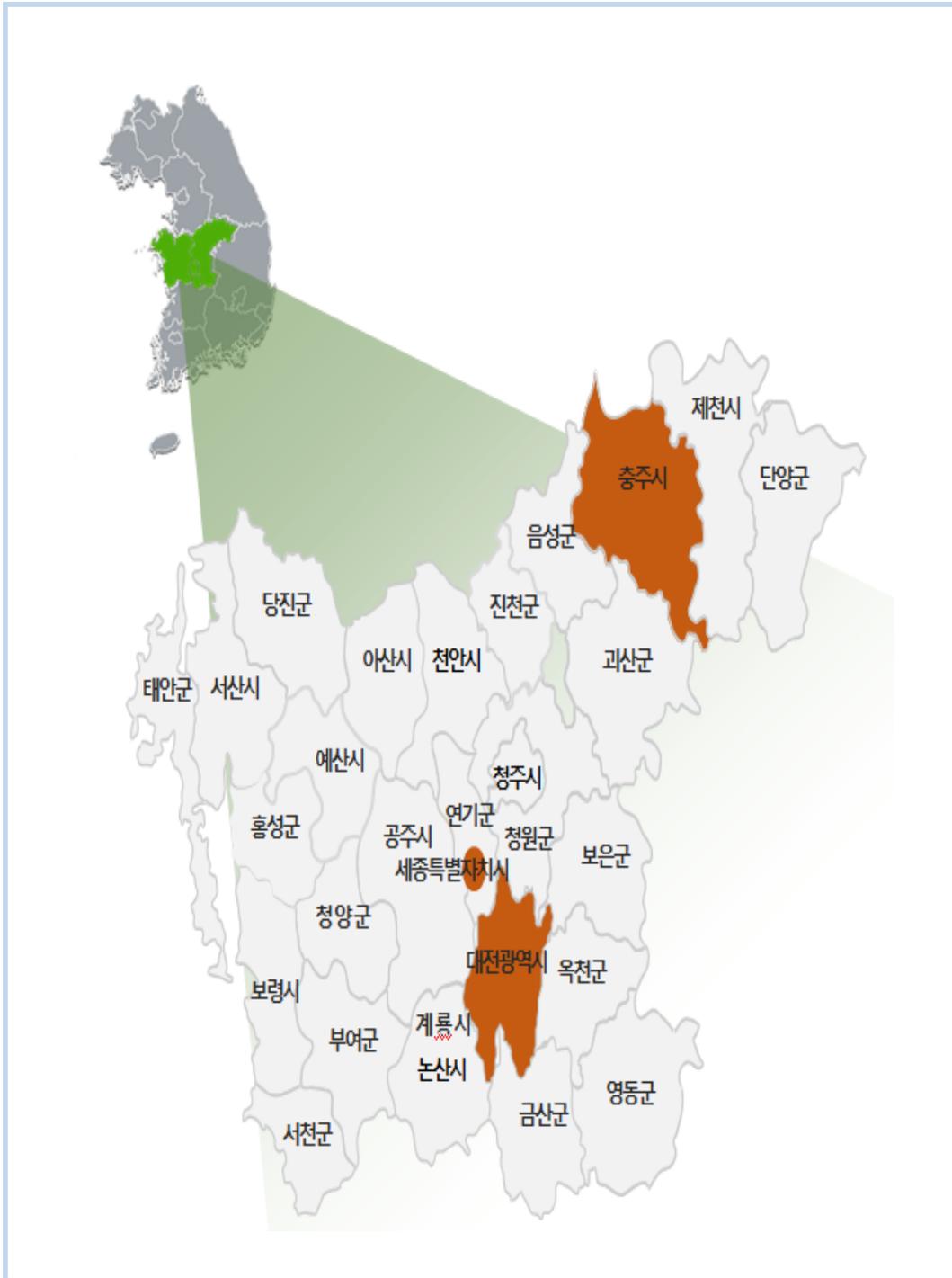
3) 충청권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충주와 청주의 앞 글자를 따서 충청도로 불리운다.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수도권과 가깝고 영, 호남과도 이동이 편리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아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정부제2청사와 함께 세종시에 공무원 및 연구기관들이 이전하면서 행정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동쪽의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은 도로서 산지가 많고 서쪽 충청남도는 금강을 따라 도시와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다.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아산 및 서해안의 당진, 서산지역은 산업단지가 발달해 있다.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은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수산업 및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있다. 문화적으로는 양반의 고을이라 불릴 만큼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이다.

〈그림 5-1〉 금강 및 대청호



〈그림 5-2〉 충청권 주요 도시



■ 대전광역시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지역이다.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시발점이다. 1989년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고 중부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남한에서 5번째로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대전 제1·2·3·4공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가 산업경제의 중심이고 관내 제조업체 수는 7,400여개로 약 5만 9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정부 제2청사 등은 행정기능,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KAIST) 등은 교육 연구기능의 중심인데 이중 대덕연구단지에는 약 250개의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벤처업체, 공공기관 등 핵심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인근에 개발중인 세종시와 더불어 남한의 행정, 연구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 대전대 등 8개 대학이 소재해 있으며 인구는 150만명.

〈그림 5-3〉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집중된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한의 중심지역인 충청권에 행정기능을 이전시키고자 건설된 특별시로 처음에는 수도 기능 전체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위헌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행정, 첨단산업, 복지, 교육, 의료 기능이 각각 구역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이 완료되었고 향후 2030년까지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능은 금강유역을 따라 형성된 장남평야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 외 인근의 조치원 등도 세종시에 편입되어 있다. 경부고속철도, 경부·호남고속도로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인구는 21만명.

〈그림 5-4〉 세종시



■ 충주시

충청북도 동북쪽에 위치한 도청소재지로 남한강 상류인 충주호, 충주댐이 위치하고 그 유역을 따라 충주평야가 발달해 있다. 충주산단, 중월산단,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관내 1,300개 제조업체에 약 1만6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중부내륙,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충북선 철도가 통과한다. 대학은 한국교통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인구는 21만명.

■ 청주시

충청북도 최대 도시로 무심천, 미호천 등 하천과 유역의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도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청주산업단지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4,700여개 업체, 약 7만 7천여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충북대, 한국교원대학교 등 7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인구는 83만명.

〈그림 5-5〉 청주시



■ 음성군, 진천군

충청북도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천평야 등 평야와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최근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에는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8개 산업 단지 등에 약 1,700여 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부권의 공업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인구는 음성군 10만명, 진천군 7만천명.

〈그림 5-6〉 충북혁신도시



■ 천안시

수도권을 배후로 한 충남의 관문이자 최대 도시로 철도, 고속도로, 국도를 통해 호남과 영남으로 통행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외 대표적인 수혜지로 천안1~4 일반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4,500여개 제조업체에 약 8만 1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등 11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인구는 63만명.

■ 아산시

충청남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장항선 철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산테크노밸리 등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41개 업체를 비롯하여 관내 740개 업체, 약 6만9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약 7천명을 고용할 예정인 제2 아산 테크노밸리가 현재 조성 중이며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1,2 지구에는 삼성 전자를 비롯한 첨단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순천향 대학교 등 7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는 32만명.

〈그림 5-7〉 탕정 삼성반도체 공장



■ 서산시, 당진시

서해안에 접한 공업도시로 바다를 메꾸는 대규모 간척사업과 임해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서해안 개발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산시에는 60만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밸리 외 12개 산업단지 등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 770개 제조업체에 약 1만 8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아산국가공단,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에 1,000여개 제조업체에 약 2만 7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서해안 공업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인근에 평택항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당진-영덕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한서대학, 신성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는 서산시 17만, 당진시 16만명.

〈그림 5-8〉 현대제철 당진공장



■ 공주시, 부여군

금강유역에 발전했던 백제의 수도 지역으로 공산성, 무령왕릉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관내 제조업체는 공주 670개에 약 8,300명, 부여에는 400개에 약 3,200명이 종사하고 있다. 공주대, 공주교대 등이 소재하고 있고 대전-당진, 천안-논산,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가 있어 교통여건은 우수하다. 인구는 공주 11만, 부여 7만명.

■ 홍성군, 보령군, 서천군

서해와 접한 지역으로 전통적인 수산업 외에도 큰 밀물과 썰물의 차이, 넓은 백사장, 다양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홍성군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내포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3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고,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에는 2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인구는 보령 10만, 홍성 9만, 서천 6만.

〈그림 5-9〉 보령시 무창포 해수욕장 바닷길 열림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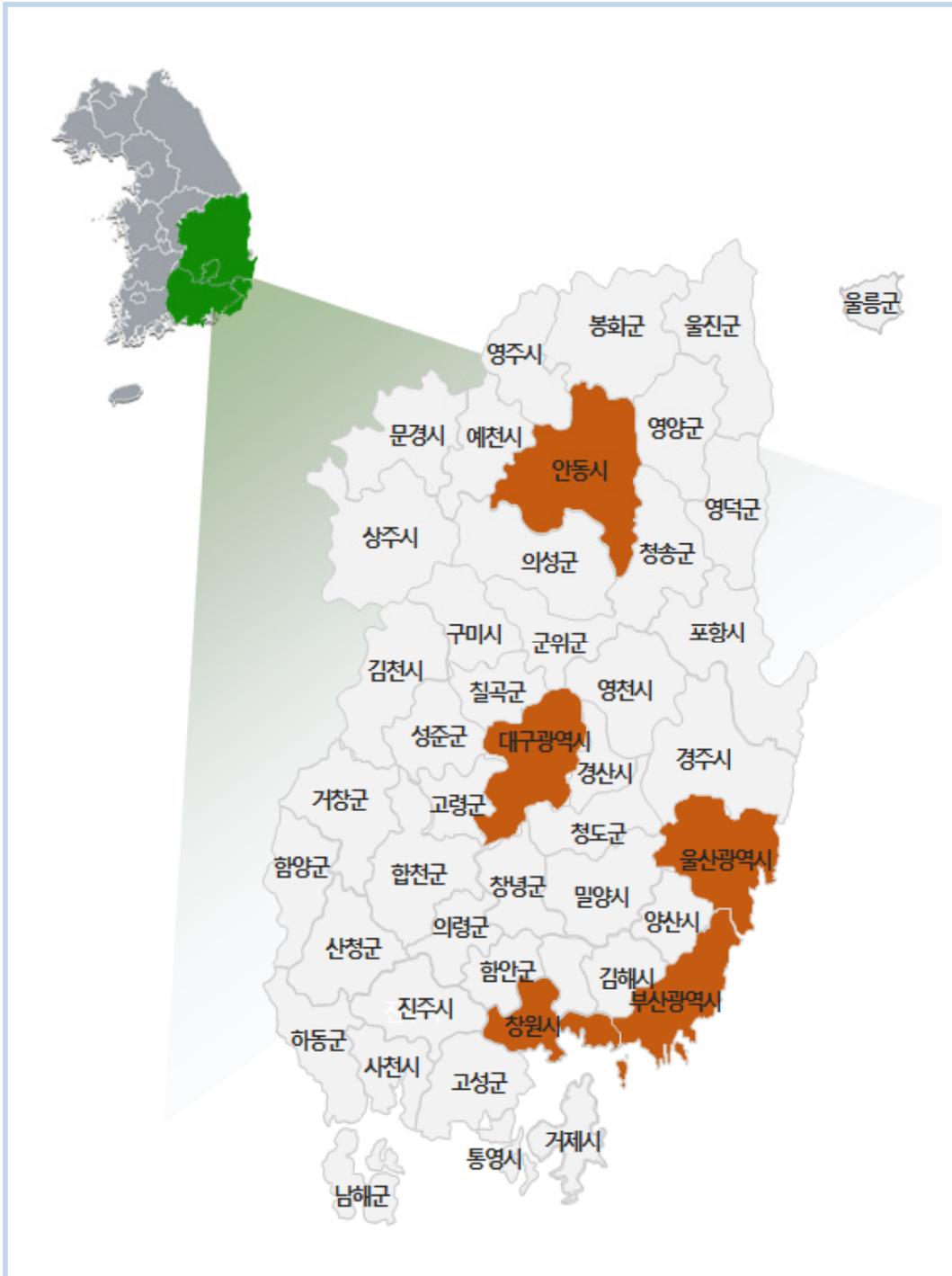
4) 영남권

충청북도 소백산맥에 위치한 문경의 새재라는 고개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영남 지역으로 불리며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포함된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일찍부터 산업발전이 이루어졌다. 남한인구의 약 26%인 1,3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하여 남해로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주요 도시들이 발전하였으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내륙공업지대와 부산, 울산, 포항 등 동·남해안와 접한 임해공업지대로 나뉘고 낙동강 하류에는 김해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부산항, 김해공항 등 잘 갖추어진 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및 인근 국가로 교통도 편리하다.

〈그림 6-1〉 낙동강 고령보 인근



〈그림 6-2〉 영남권 주요도시



■ 부산광역시

인구 350만명으로 명실상부한 남한의 제2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이다. 동부지역은 구릉성 산지이고 서부지역은 평야지대로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한다. 남해안을 끼고 있어 사계절 온도 변화가 적고 따뜻하다. 경부선과 동해 남부선 등 철도,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및 김해국제공항, 부산항이 있어 국내외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부산경제활동의 핵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4,000여개 제조업체에 약 11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중 녹산 국가산업단지에 1,5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3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해수욕장, 온천, 광안대교, 국제 영화제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업에는 65,000개 업체에 약 33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등 12개 대학이 소재해 있다.

〈그림 6-2〉 부산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며 북동부와 남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지형 지형으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무더운 내륙 분지형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서 1~4 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12개 산업 단지에 4,200여개 업체를 비롯 관내 2만 6천개 제조업체에 약 17만 6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1960년대 경제발전 초기에는 섬유,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지능형 자동차 부품, 태양광 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대구혁신도시가 개발 되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였다. 고속도로(경부, 광주-대구, 중앙, 대구-포항, 대구-부산), 경부선 철도, 대구공항 등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인구는 250만명.

〈그림 6-3〉 대구시 야경



■ 울산광역시

자동차, 조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업도시이다. 지형은 북·서·남의 삼면이 태백산맥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으로 동해와 접해 있어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초의 정유공장인 울산정유공장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조선소),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남한의 자동차, 조선, 중화학 공업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였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도시, 전국 화학 산업 생산 1위, 근로자 1인당 개인소득 전국 1위 도시이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관내에 6,800개 제조업체, 약 18만 4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동해 남부선 철도가 동부지역을 지나고, 경부고속철도가 울산역까지 연결되며 경부고속도로가 서북부지역을 지나고 있다.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인구는 120만명.

〈그림 6-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포항시

동해에 접한 항만도시로 1970년대 영일만 일대에 포항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 제철, 석유화학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포스코 국가공단, 포항철강1~4단지 등 관내 2,500개 제조업체에 약 3만 8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철강 산업 외에도 포항블루밸리, 포항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나노·생명공학·지능로봇·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있다. 대구-포항, 울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선 철도가 연결되는 등 교통이 편리하며 포항공대, 한동대 등 4개 대학이 위치해 있다. 인구는 51만명.

〈그림 6-5〉 포항제철소



■ 경주시

신라 천년의 수도지역으로 남쪽으로 울산광역시, 북쪽으로 포항시, 동쪽으로 동해와 접한다. 불국사, 석굴암, 무열왕릉, 보문관광단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다. 제조업체는 2,700여개 업체에 약 3만9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며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주대, 서라벌 대학교 등이 있으며 인구는 26만명.

■ 안동시

경상북도 중부 중심지로 도청소재지이다. 서원, 사찰 등 유교적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경주와 함께 손꼽히는 문화관광도시이다. 동쪽지역은 호수지역으로 안동호와 임하호가 있고 남서지역은 낙동강 유역의 풍산평야가 발달해 있다. 풍산농공단지 등에 860여개 제조업체가 입지하여 약 3,9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중앙, 당진-영덕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안동대학교, 안동과학대, 안동불교대학 등이 있다. 인구는 17만명.

〈그림 6-6〉 경주 불국사



■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쪽에 위치하여 대구의 위성도시로 출발한 지역으로 중앙부의 낮은 구릉지와 금호강 유역 퇴적평야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규모이다.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대학교가 12개, 고등학교 12개, 중학교 15개, 초등학교 31개 등 교육여건이 우수하여 교육의 도시로 불린다. 산업은 기존의 경산1~3산업단지, 경산지식 산업지구 외에 경산4산업단지가 추가 건설중에 있으며 기계, 금속, 섬유 등 분야에 약 2,6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경부, 중앙, 익산-포항 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인구는 28만명.

■ 구미시

대구광역시 북쪽에 위치한 공업지역이다. 시의 중앙을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1960년대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조성된 내륙 공업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섬유, 전자 공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4,000여개로 여기에 약 10만 1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등 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다. 인구는 42만명.

■ 김천시

경북 서부지역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지는 낮은 구릉지와 금릉평야 주변에 발달해 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등에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관내 200개 제조업체에 약 1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가 개발되어 한국도로 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포함 약 2만7천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성장이 기대된다. 경부,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김천대학 등이 위치해 있다. 인구는 14만명.

진주시

서부 경남의 경제, 교육, 행정의 중심도시이다. 동북부는 산지가 위치하고 서부로는 남강, 경호강과 유역의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다. 지역경제의 핵심인 상평산업단지 외에 4개 산업단지 등에 300여개 제조업체, 약 9,6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진주성, 축석루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등축제 등 문화행사를 통한 관광산업도 발달해 있다.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동부의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포함 약 3만 7천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해,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경전선 철도가 통과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인구는 35만명.

〈그림 6-7〉 진주 혁신도시



■ 창원시

경상남도 도청소재로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경상남도 최대 도시이다. 2010년 창원과 인근 진해, 마산이 통합되어 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울산, 부산, 사천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임해공업지역의 중심으로 창원국가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진해국가산단 등 3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6개 등을 포함해 관내 9,300여개 제조업체에 약 13만 3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경남대, 창원대 등 7개의 대학이 있다. 인구는 106만명.

〈그림 6-8〉 창원시



■ 김해시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서쪽으로 창원시와 접하고 있고 남해로 유입되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여 평야지역이 발달하였다. 산업단지4개, 농공단지 8개 등에 2,300개

제조업체에 약 6만 6천명이 종사 하고 있으며 장유, 율하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요건을 갖추고 있다. 가야대, 인제대, 김해대학교 등이 있으며 인구는 53만명.

■ 양산시

남쪽은 부산시, 동쪽은 울산광역시와 접하고 있으며 부산의 배후 주거, 공업지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3,600여개, 약 4만9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남쪽 낙동강 유역에는 물금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남해고속도로와도 직접 연결된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양산대학교가 있으며 인구는 30만명.

■ 거제, 통영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조선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거제에는 옥포 등 2개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업체가 입주해 있고 5개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35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통영에는 안정 국가산업단지내 성동조선소 등 156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는 조선소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다소 침체되고 있으나 거제 외도, 해금강,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형상으로는 섬이지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며 신거제대교, 거가대교 건설로 거제에서 통영, 부산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인구는 거제 26만명, 통영 14만명.

〈그림 6-9〉 거제시 조선소



■ 울릉군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섬의 중앙부에는 최고봉인 성인봉이 있으며 대부분 해안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쪽에 일부 분지가 발달해 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해 수산업이 발달해 있다. 포항, 강릉에서 정기 운항하는 여객선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는 한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이다. 우리나라 경찰(독도경비대) 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인 2명이 거주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베정부에 들어서는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도를 국제 문제화하고 있다. 인구는 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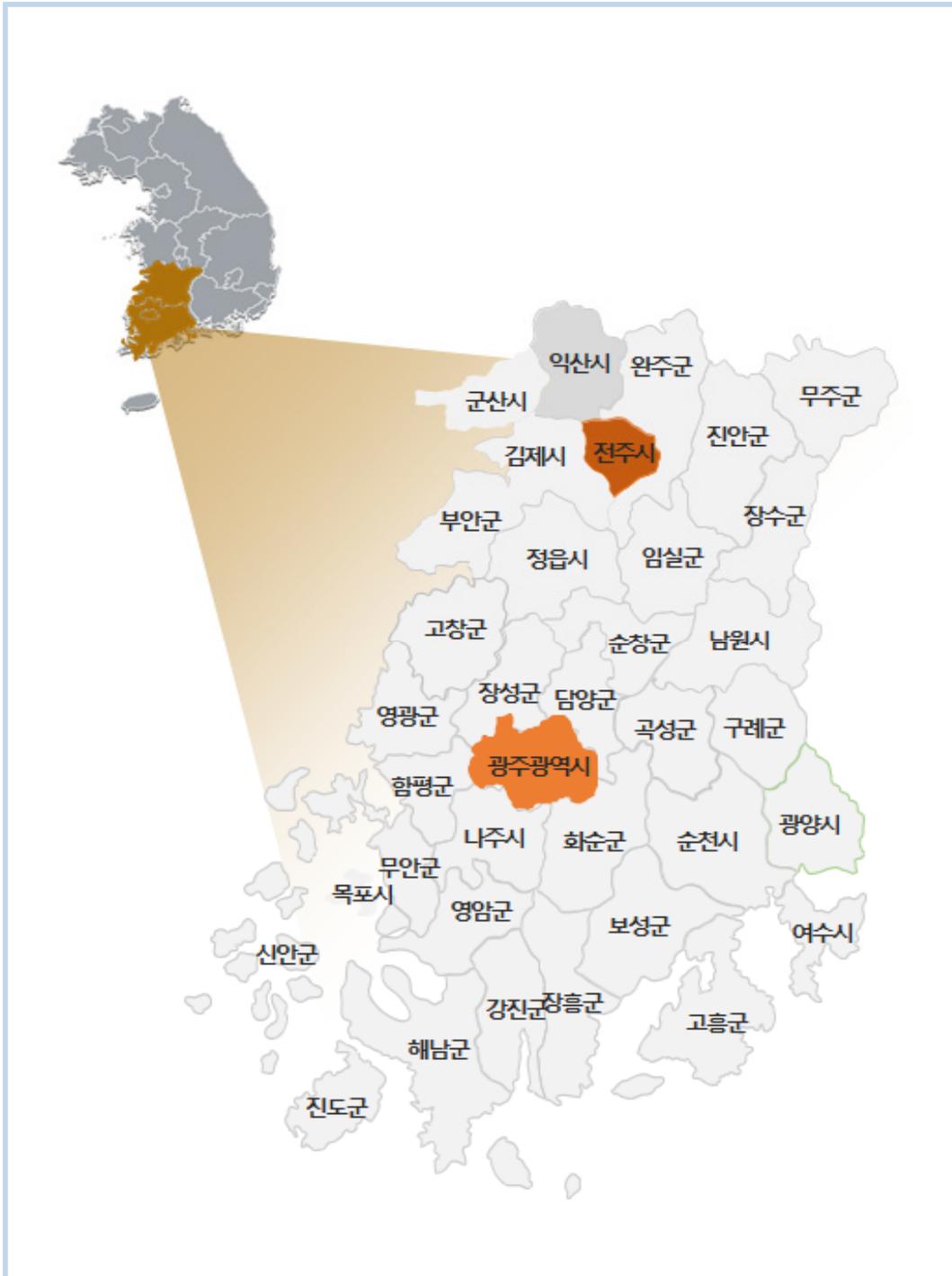
5) 호남권

금강(또는 김제의 벽골제라는 호수)의 남쪽지방이라는 뜻으로 호남 지방으로 불리며 전라남북도 및 광주광역시도 포함된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서쪽지역은 남한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비롯하여 나주 평야 등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과 긴 해안선을 활용한 수산업이 발달하여 산업화 이전에는 남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동쪽지역은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다.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 호남선·전라선·군산선 철도 등 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군산, 여수, 광양 등에는 대규모 임해 공업단지가 발달하였다. 판소리 등 무형문화재와 음식문화가 발달하여 예술의 고향으로도 불리며 광주미술축제, 전주 대사습놀이, 남원 춘향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림 7-1〉 지리산의 가을



〈그림 7-2〉 호남권 주요도시



■ 광주광역시

호남지역 최대의 도시로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다. 동쪽의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와 황룡강과 영산강이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유역에 광주분지가 발달하였다. 호남고속도로 종착지이며 대구-광주, 무안-광주, 호남선 철도, 광주 공항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지역과의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하남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기계·금속·섬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동차, 디자인, 가전, 초정밀기계 등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8,300여개이고 약 8만 2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국제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모습도 갖추고 있으며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학교 등 10개의 대학교가 있다. 인구는 150만명.

〈그림 7-3〉 광주광역시



■ 전주시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다. 만경강 남측 평야 지역에 발달한 도시로 전주천이 도심을 남에서 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전주성, 한옥마을 등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김제평야, 만경평야를 배후지로 발달한 농업 이외 예도 전주1,2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섬유, 종이, 화학, 기계 등에 관내에 2,300개 제조업체, 약 1만 4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약 300만평 규모의 전북혁신도시가 건설되어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 기관이 이전하였고 약 3만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호남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학교 등이 소재한다. 인구는 전북 지역 최대인 66만명.

〈그림 7-4〉 전주시 한옥마을



■ 군산시

전라북도 북서부 서해안 공업지역으로 시의 북쪽과 남쪽에 금강과 만경강이 흘러 서해로 유입된다. 인근 익산시, 김제시와 함께 호남 평야의 중심을 이루어 일찍부터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해안선과 섬들이 많아 어업도 발달하였다. 또한 군산산단을 비롯하여 2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지구 등에 67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관내 전체로는 1,700개 제조업체에 약 3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부터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4km의 방조제 건설하고 배후에 한중경제협력단지, 생태도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공주-서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군산대학교가 소재한다. 인구는 28만명.

〈그림 7-5〉 새만금 방조제



■ 익산시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군산시와 접하고 있다. 북서 쪽으로는 금강, 남서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어 전국적인 곡창지대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1970년대 수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을 계기로 공업도시로 빠르게 발전하여 1개의 국가산업단지, 3개 일반 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공단에 4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또한 동측 왕궁면 일원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하여 식품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수는 2,400여개이며 근로자는 약 2만 6천명이다. 시의 동쪽지역으로 호남고속도로, 서쪽 인근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전북대, 원광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인구는 30만명.

〈그림 7-6〉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감도



■ 목포시

전라남도 남서쪽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1897년 개항된 이래 일본과의 무역, 교류를 통해 한때 호남지역 제1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형적인 여건상 관내 제조업체는 대양산단과 세라믹 산단 등에 950업체, 약 3,400여명의 근로자 밖에 없으나 인근 영암에 소재한 340만평 규모의 대불국가업단지에 입주한 조선, 기계, 제강, 석유화학 등 업체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홍도·흑산도 등 다도해와 내륙의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교통 중심지로 수려한 해상경관과 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호남선 고속전철, 무안 국제공항, 목포신항, 대불항 등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다. 목포대, 목포해양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구는 24만명.

〈그림 7-7〉 목포시



■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광양만, 순천만,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남해안 공업, 관광 중심지역이다. 여수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석유화학,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1,220여개 업체, 약 2만명, 광양에는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제철 업종 중심으로 818여개 업체에 약 1만6천명, 순천에는 순천 지방산업단지 등에 1,100여개 업체에 약 7천9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순천의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발달해 있다.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간 고속도로, 여수공항 등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순천대학교, 여수대학 등 5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구는 여수 27만명, 순천 27만명, 광양 14만명.

〈그림 7-8〉 광양제철소



6) 제주권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산섬으로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산섬 특유의 지형과 자연환경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주요 경제기반도 관광산업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남쪽은 서귀포시, 북쪽은 제주시로 구분되며 산 정상에는 화구호(화산의 분출구에 물이 고인 호수)인 백록담이 있다. 주요 관광 명소로는 만장굴, 성산일출봉, 성읍민속 마을 등이 있다. 관내 사업체 수는 약 5만 1천개 인데 이중 제조업체는 2천여 개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반면 관광산업과 관련있는 숙박, 음식업종은 약 1만 3천개 업체에 1만 4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제주대, 제주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가 있으며 인구는 61만명.

〈그림 8-1〉 한라산과 유채꽃



사회생활 집필자

제1장 사회보장제도 이해	태용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사
제2장 생활경제 및 금융	김종귀 한국은행 교수
제3장 생활법률	손행선 국민대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제4장 결혼과 가정생활	김현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제5장 주요 도시 이해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발행처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전화 (031)670-9327 / 팩스 (031)672-9591
초판	제 1쇄 2007년 1월
개정	제 1쇄 2012년 12월
재개정	제 1쇄 2014년 5월 제 2쇄 2015년 4월 제 3쇄 2015년 9월 제 4쇄 2016년 3월
제2재개정	제 1쇄 2017년 5월
인쇄처	(주)지원인쇄출판사 07554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70 전화 (02)2272-5562 / 팩스 (02)6489-5562
